
碩士學位 請求論文

韓國 特殊教育行政의 史的 考察

指導教授 梁 鎭 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行政專攻

李 相 眞

1995年 8月

韓國 特殊教育行政의 史的 考察

指導教授 梁 鎮 健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5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行政專攻

提出者 李 相 眞



李相眞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5年 8月 日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초 록」

韓國 特殊教育行政의 史的 考察

이 상 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지도교수 양 진 건

한국특수교육행정사의 제1기는 1945년부터 1969년까지로 「교육법」을 통해 특수교육제도가 규정됨으로써 특수교육행정의 초석이 마련되었다. 「교육법」을 통해 특수학급 설치 및 특수학교 설립 의무화를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을 제도적으로 정비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 특수교육행정의 발전은 1970년대 이후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증대되고 공적 책임이 확대되면서 비로소 시작되었는데 1970년부터 1976년까지의 기간을 한국특수교육행정사의 제2기라고 할 수 있다. 교육발전과 국민의 재정능력 증대를 기반으로 특수교육이 확대되었다.

한국특수교육행정사의 제3기는 1977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으로 1977년에 특수교육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공포되었고 1984년에는 특수교육진흥 7개년 계획이 수립됨으로써 됨으로써 특수교육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시기적 특징이 있다.

한국특수교육행정사의 시기적 특징을 토대로 한국특수교육의 문제 및 개선방안을 검토해보면 크게 특수교육기회의 확대, 특수교육의 질적 제고, 교사양성과 재교육, 지원체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주목된다.

目 次

1. 緒 論	1
第 1 節 研究問題 및 目的	1
第 2 節 研究方法 및 制限點	4
第 3 節 時代區分의 意味과 內容	5
2. 本 論	7
第 1 節 韓國特殊教育行政의 定立	7
1. 第1期 韓國特殊教育行政의 特徵 및 概觀	7
2. 第1期 韓國特殊教育行政의 內容	8
1) 特殊教育制度	8
2) 特殊教育行政 및 財政	16
3) 特殊教育政策	19
4) 特殊教育 教員 資格制度 및 養成	21
第 2 節 韓國特殊教育行政의 發展	26
1. 第2期 韓國特殊教育行政의 特徵 및 概觀	26
2. 第2期 韓國特殊教育行政의 內容	27
1) 特殊教育制度	27

2) 特殊教育政策	33
3) 特殊教育 教員 資格制度 및 養成	34
第 3 節 韓國特殊教育行政의 擴大	35
1. 第3期 韓國特殊教育行政의 特徵 및 概觀	35
2. 第3期 韓國特殊教育行政의 內容	36
1) 特殊教育制度	36
2) 特殊教育教員養成 및 資格制度	42
3) 特殊教育 行政과 財政	44
4) 特殊教育政策	48
3. 結 論 및 提 言	55
第 1 節 結 論	55
第 2 節 提 言	56
1. 特殊教育的 機會擴大	55
2. 特殊教育的 質的 提高	61
3. 教師養成과 再教育	63
1) 教師養成制度	63
2) 教師 再教育	67
4. 支援體制	68
參考文獻	72

表 目 次

<표 1> 특수학교 설립상황(국·공립)	12
<표 2> 1960년대 까지의 특수학교 설립상황(사립)	13
<표 3> 국립맹아학교 사범과 교육과정	23
<표4> 초기 특수교사자격기준	25
<표 5> 연도별 특수학교 설립현황	28
<표 6> 설립별 특수학교 현황	39
<표 7> 시·도별 특수학교 현황	39
<표 8> 연도별 취학현황	42
<표9> 특수교육 확대계획	49

1. 緒 論

第1節 研究問題 및 目的

特殊教育은 특수한 교육적 필요(special needs of education)를 가지는 특수아동¹⁾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의미하며 그들의 교육적 필요를 이해하고 그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가진 특수교사와 교육의 내용과 방법 면에서 그와 같은 교육적 필요에 부합되는 특수교육 프로그램 등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한다.

特殊教育行政이란 이러한 특수교육활동을 조력하는 교육행정행위로서 현대 교육행정의 개념에 따라 정의한다면 특수교육행정은 사회적, 공공적, 조직적 활동으로서 특수교육에 관한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달성을 위한 협동적, 조직적 단체행동을 조성하는 작용²⁾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특수교육행정이란 특수교육활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달성에 필요한 인적, 물적, 조건을 정비확립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지도감독을 포함하는 일련의 봉사활동(service activities)이다.

특수교육행정은 그것이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적 협동행위임을 본질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나 그것이 주로 인사, 시설, 재무의 관리와 지도감독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반 교육행정과 공통되는 점도

1)특수아동은 심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handicapped children)과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영재아동(gifted children)을 다 같이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그러나 우리나라 『특수교육진흥법』에서 영재아동은 특수교육의 대상자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2)정봉도, 『특수교육의 행정 및 재정』, 특수교육,1994. p.17.

많지만 또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다. 특수교육행정은 특수교육에 관여하는 사회집단의 독자성이 매우 강하고, 직무의 전문화가 필요하며, 투자가 막대하고 장기적이며, 성과 평가가 곤란하다는 점³⁾ 등 일반 교육행정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特殊教育行政史란 그러한 특수교육행정의 역사를 의미한다. 특수교육행정사는 교육행정사가 일반 교육사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듯이 일반 특수교육사와는 다르다. 교육행정사의 대표적인 내용이 교육제도와 교육정책의 역사인 것처럼 특수교육행정사는 특수교육제도와 특수교육정책의 역사가 핵심 내용이다. 국가전반의 교육활동을 법률로써 조직화한 것이 교육제도라고 한다면 교육제도를 수립하고 그 운영의 대강을 결정하는 것이 교육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교육행정사에서는 특수교육제도, 특수교육 관련법규, 특수교육의 행정조직 및 특수교육의 재정, 특수교육 교원 자격제도 및 양성, 특수교육정책 등에 대한 역사적 규명작업이 요구된다.

특수교육행정사를 위한 작업은 교육행정사 작업이 그렇듯이 매우 미진한 게 현실이다. 특수교육사에 대한 작업이 일부 진행되기는 했지만 그것은 특수교육의 年誌史⁴⁾이거나 特殊教育通史⁵⁾ 수준이며 특수교육사상사나 특수교육행정사와 같은 주제에 관한 연구 형식을 띠고 있지를 못하고 있다. 특수교육행정사 연구는 특수교육행정이나 교육사 연구의 과학화 (scientification)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특수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창의적, 기술적 행위의 문제성과 모순성을 확인하고 대안 모색을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다.

3)남정걸,“특수교육 학제의 개선방향”,제4회 특수교육심포지움,『특수교육 제도의 개선방향』,한국특수교육학회,1988.pp.5-34.

4)대표적인 것이 한국특수교육협회,『한국특수교육협회 30년사』,1994.이다.

5)대표적인 것이 교육부,『특수교육백서』,1993.이다.

E.P.Cubberley는 교육제도와 교육경영을 중심으로 교육의 발전을 찾고자 했던 독특한 교육사 연구방법 때문에 교육행정에 관한 훌륭한 저작들⁶⁾을 많이 남겼다. E.P.Cubberly의 교육사학에서 이 제도사주의적 요소를 참고로 하여 집필된 국내의 저작들⁷⁾도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 경향은 특수교육행정사의 연구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고 또한 적절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 분야의 선도적인 작업의 일환으로 한국 특수교육행정의 제 주제에 대한 역사적 검토를 그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1. 본격적인 의미의 한국특수교육행정은 1945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94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한국특수교육행정의 내용과 성격을 역사적으로 규명하였다.

2. 1945년부터 현재까지의 특수교육행정적 특징과 성격을 중심으로 하여 제1기 1945년-1969년, 제2기 1970년-1976년, 제3기 1977년-현재로 시대를 구분하였다.

3. 한국특수교육행정의 핵심적 주제를 크게 특수교육제도, 특수교육의 행정 및 재정, 특수교육 교원 자격제도 및 양성, 특수교육정책으로 대별하고 이 주제에 대해 역사적으로 규명하였다.

4. 한국특수교육행정의 역사적 규명만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이를 통해 한국특수교육의 현황, 문제점, 발전 방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6)대표적인 것으로 Ellwood P. Cubberley, Public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 A Study and Interpretation of American Education History (Boston, Mass, 1919)가 있다.

7)대표적인 것으로 강길수,『한국교육행정사연구』,교육출판사,1984.와 양진건,『제주교육행정사』,제주문화,1992.가 있다.

第2節 研究方法 및 制限點

1945년부터 1990년에 이르기까지의 한국특수교육행정의 내용과 성격을 역사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관계 문헌자료들이 방대하게 조사되었고 특수교육제도, 특수교육의 행정 및 재정, 특수교육 교원 자격제도 및 양성으로 대별된 주제별로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즉 특수교육제도와 관련하여 특수교육 관련법규 및 특수학교 설립상황과 연도별 특수학교 현황, 취학현황 등이 조사되었고 특수교육의 행정 및 재정과 관련해서는 특수교육 행정조직과 함께 특수교육 투자의 규모, 특수교육 재정의 배분 등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특수교육 교원 자격제도 및 양성과 관련하여 특수학교 교사양성제도의 형태 및 조직, 교육과정 등이 조사되었다.

조사된 관계 문헌자료들은 시기별로 다시 정리되어 시대적 특징, 변화, 성격 등을 역사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병행되었다.

이같은 본 연구의 현재주의적 경향은 교육의 역사를 현재의 관점에서 취급함으로써 교육사 연구가 교육의 “현 문제”와 너무나 관련이 적다는 비난에 대한 예측가능하며 실제적으로 불가피한 반응이기도 하다. 또한 그것은 역사적 진보에 대한 숭배(cult of historical progress)와도 관련되며 현재의 특수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좀 더 기능적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함과도 관련이 크다.

본 연구는 1945년 이후 한국 특수교육행정의 역사를 규명하고자 했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본격적인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前史

는 물론이며 1945년 이전의 내용에 대한 규명⁸⁾이 선결되어야 한다. 아울러 연구의 주제를 크게 특수교육제도, 특수교육의 행정 및 재정, 특수교육 교원 자격제도 및 양성으로 대별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제들이 조망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를테면 특수교육행정의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人事의 문제나 특수교육행정 指導性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못함으로써 연구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시기별 구분 또한 「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형식적인 시대구분 양식을 따랐다는 점도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다.

第 3 節 時代區分의 意味와 內容

특수교육의 사적 고찰에 대한 시대구분의 문제는 특수교육의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을 위한 유효한 방편이다. 여기에서 방편이란 역사인식의 방법에 있어 필요한 하나의 도구요 가설이란 뜻이다. 다시 말해서 시대구분은 사실이 아니라 사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해명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가설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특정한 시대구분의 타당성은 역사적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통찰하여 새로운 지식을 증진시키는데 유효하냐 하는 여부에 달려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1945년 이후 한국 특수교육행정의 역사를 크게 3기로 시대를 구분하였는데 그 구분의 준거는 당대의 특수교육의 특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제에 따른 시대구분이라고 할 수

8) 이와 관련 최근의 주목되는 작업으로는 한규원, “일제에 대한 민족적 저항기의 특수교육”, 『韓國教育史學』 제16집, 1994, 한국교육학회 교육사연구회. 가 있다.

있다. 이것은 시대를 주제별로 나누어 서술하는 방법으로서 본질적으로 논리적 일관성을 결여할 위험성이 많으며 또한 한 시대가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계기적 발전에 대해서 아무런 시사도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시대적 특징을 일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느 방법보다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수교육행정의 발전이라는 기준을 전제로 하여 특수교육제도, 특수교육행정 및 재정, 특수교육정책, 특수교육 교원자격제도 및 양성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각 시기의 특징들이 시간적·공간적인 종횡의 연관성을 가지고 설명되도록 정리하였다.



2. 本 論

第1節 韓國特殊教育行政의 定立

1. 第1期 韓國特殊教育行政의 特徵 및 概觀

한국특수교육행정 제1기는 시기적으로 1945년부터 1969년까지의 기간이다. 광복과 더불어 자주국가로서 새로운 교육제도를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명문화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여야 할 것임을 천명한 1949년의 「교육법」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되는 학교의 한 종류로서 특수학급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였다. 나아가서 특수학급의 목적, 일도일교 이상의 특수학교 설립 의무화 등을 규정하고 공회당 등을 이용하거나 국민학교와 중학교 등에 각종 장애자들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이와 같은 법규면의 규정은 일단 특수교육을 제도적으로 정비한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특수교육은 교육투자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오래도록 한국 교육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몇몇 뜻있는 민간인에 의하여 특수교육기관이 설립 유지되었음은 불가피한 현실이었다. 일부 종교인들이 맹아·농아들을 비롯한 장애자들에게 일종의 보호와 복지의 견지에서 시설을 마련하고 점차 특수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서 특수교육이 발전되었다.

미군정하인 1947년에 특수교육기관이 보건후생부에서 문교부의 관할로 이관되도록 결정되었다. 그것은 보호에서 교육으로의 기능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에 앞서 1945년에 국립맹아학교가 발족되었으며 동교는 1948년 정부수립과 더불어 문교부 산하에서 관할 유지되었다. 그리고 1947년 9월에 국립맹아학교에 중등부가 설치되었음은 중등 단계에서의 특수교육의 효시가 되었다. 이것을 제외하면 국공립 특수학교 설립은 그후 「교육법」의 명문화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제대로 실천에 옮겨 지지 않았다.

2. 第1期 韓國特殊教育行政의 主題

1) 特殊教育制度

(1) 特殊教育 關聯法規



교육법규란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을 규정한 법규이다. 교육제도와 그 운영은 주로 교육행정의 방식으로 실현되며 이런 의미에서 교육법규는 주로 광의의 교육행정에 관한 법규라고 할 수 있다. 교육법규를 협의로 해석할 때에는 학교제도 및 사회교육 전반을 포함하는 문교관계법규를 의미한다.⁹⁾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그 해 7월 12일에 「제헌헌법」이 전문과 제7장 제 103조로 제정, 공포되었다. 그 중 제8조에는 “모든 국민은

9)이완정,『교육법의 이론과 실상』,문음사,1986,pp.41-49.

법률 앞에 평등하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¹⁰⁾ 그리고 제16조에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¹¹⁾고 하여 교육을 국민의 기본 권리의무로 규정하였다. 이 헌법에 따라 1949년 12월 31일 법률 제86호로 「교육법」이 전문 제11장 제173조로 제정되어 특수교육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교육법에 나타난 학제는 제8조에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전항의 초등교육을 위한 시설을 확보함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¹²⁾고 규정하고, “학령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그 보호하는 아동에게 초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¹³⁾”고 명시하고 있다. 또 9조에는 “모든 국민에게 그 능력에 따라 수학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방책으로 ① 학교를 지역적 또는 종별적으로 공평하게 배치하고, ② 학자금의 곤란한 자를 위하여 장학금 제도 및 학비보조금 제도를 실시하며, ③ 직업을 가진자의 수학을 위하여 야간제, 계절제, 시간제 기타 특수한 교육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¹⁴⁾고 규정하여 의무교육의 책임과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였다.

제75조에서 “특수학교에는 교장, 교감과 교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정리하며 학생을 교육하고 교장 유고 시는 교장을 대리한다. 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교육한다.”¹⁵⁾고 교직원 및 임무를 규정하고 제81조에는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에 의한 차

10) 「제헌헌법」, 제8조

11) 「제헌헌법」, 제16조

12) 「교육법」, 제8조

13) 「교육법」, 제8조

14) 「교육법」, 제9조

15) 「교육법」, 제75조

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¹⁶⁾고 하고 그 6항에 특수학교를 설치하게 하여 장애 아동의 교육을 위한 학교설치를 규정하였다. 제85조에는 “국립학교와 법률에 의하여 설립의무가 있는 자가 설립하는 학교이외의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편제, 기타 설립기준에 의하여 공·사립 특수학교는 문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¹⁷⁾고 하여 공·사립 특수학교의 설립을 규정하였다.

「교육법」 제143조에서 “특수교육은 맹자, 농아자, 정신박약자, 기타 심신에 장애가 있는 자에게 국민학교, 중학교에 준한 교육과 그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을 가르침을 목적으로 한다. 특수학교에서는 특수학교를 졸업한 자 중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목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병설할 수 있다”¹⁸⁾고 특수교육 목적에 관해서 규정했고, 제144조의 설립의무에서는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도는 학교를 1개교 이상 설립하여야 한다”¹⁹⁾고 하여 설립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제145조에서는 특수학급의 설치와 대상에 관하여 “특별한 경우에는 공회당 기타 사용가능한 건물을 이용하여 국민학교 또는 중학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 1. 신체허약자, 2. 성격이상자, 3. 정신박약자, 4. 농자 및 난청자, 5. 맹자 및 약시자, 6. 언어 부자유자, 7. 기타불구자”²⁰⁾라고 규정하여 특수교육의 법적 근거를 확고히 했다.

이와 같은 기본법에 의하여 특수교육의 제도적 준비를 위한 조치로 1959년 1월에 맹·농아교육의 분리를 대통령령으로 장애영역별로 체계화하여

16)「교육법」, 제81조

17)「교육법」, 제85조

18)「교육법」, 제143조

19)「교육법」, 제144조

20)「교육법」, 제145조

효과적인 특수교육을 하게 되었다. 1962년 10월에는 맹·농아를 위한 특수학교 설치에 대한 지시²¹⁾로 1963년부터 특수학교가 없는 도는 1개교 이상 공립 또는 사립으로 개설하도록 하고, 그 운영비는 의무교육비에 추가하여 부담할 것을 명시하였다.

(2) 特殊學敎制度

1949년 「교육법」의 제정은 특수학교제도의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하는 중요한 이정표였다. 1946년 사립 특수학교인 대구맹아학원(현, 대구광명학교 : 대구영화학교 전신)이 이영식목사에 의해 광복기념사업으로 설립되고²²⁾, 1950년 한국전쟁으로 전쟁고아와 장애아동이 급증함에 따라 전국 주요 도시에 특수교육 시설이 확대되었다. 이들 특수교육 시설의 대부분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설립²³⁾되었고, 한국 특수교육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교육법」 제144조에서는 특수학교의 설치 의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및 도는 특수학교를 각 1개교 이상 설립해야 한다”²⁴⁾고 규정하여 특수학교를 설립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특수교육진흥법」이 공포되기 전까지는 그 설립이 부진했다. 「교육법」에 의거하여 1960년대 말까지 설립된 국·공립 특수학교 상황²⁵⁾은 <표 1>과 같다.

21) 「문학관」, 7567

22) 국립서울맹학교, 『개교 80년사』, 서울맹학교, 1993, pp.12-16.

23) 최병문, 『특수교육칼럼』, 서울: 한국구화학교 말한다 출판사, 1979, p.26.

24) 「교육법」, 제144조

25) 문교부, 『특수교육운영자료』, 1970. 참조.

<표 1> 특수학교 설립상황(국·공립)

장애별	년도	설립시·도별	학교명	비 고
맹학교	1913	서울	서울맹아학교	구 제생원 맹부(국립)
	1951	제주	제주영지학교	구 제주맹아학교(맹·농)
	1953	부산	부산맹학교	구 부산맹아학교
	1969	대전	대전대명학교	구 대전 맹아학교(사립에서 공립으로)
농학교	1913	서울	서울선회학교	구 제생원 아부(국립)
	1953	부산	부산배화학교	구 부산맹아학교 아부
	1969	경남	경남친광학교	구 경남국민학교(농·정박)
정신박약 학교	1968	대구	대구남양학교	
	1969	경남	경남혜립학교	구 경남국민학교(정박)

이상에서 시·도별 설립을 보면, 서울 2개교, 부산 2개교, 대구, 대전, 경남, 제주 등이 1개교씩 설립되어 있다. 장애영역별로 보면, 맹학교가 4개교, 농학교가 3(1)개교, 정신지체학교가 2개교 설립되었다.

이상과 같은 기본법에 의한 제도적 조치 외의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과정을 살펴 보면, 1959년 1월에 맹·농아 교육의 분리를 위한 대통령이 공포되어 종래의 맹아학교란 명칭으로 장애영역이 다르면서도 같은 학교체제로 운영되어 오던 것을 영역별로 분리해서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았다. 이 령에 의거 동년 3월에 대구맹아학교가 대구광명학교(맹)와 대구영화학교(농)로 분리 인가되고, 4월에는 국립서울맹아학교가 서울맹학교와 서울농학교로 분리하게 되어, 이로 인해 특수교육이 영역별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1962년 10월 교육부에서는 「맹·농아를 위한 특수학교 설치에 대한 지시(문학관7576)」를 다음과 같이 시달하였다.

첫째, 교육법 제144조에 의거 특수학교가 없는 도로 하여금 1963년도부터 특수학교를 최소한 1개교 이상 개설하여 관내 장애아동들로 하여금 실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이수하도록 할 것.

둘째, 설치교는 가급적 도립으로 하되, 곤란한 시는 유지로 하여금 사립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할것.

셋째, 설치되는 도립 특수학교 운영비 및 사립 특수학교 보조금은 1963년부터 의무교육 예산에 추가 내시할 것²⁶⁾ 등이다.

이것은 특수학교 설립의 추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한 문교부의 능동적인 정책추진의 조처였으나, 실제로 이 무렵을 전후하여 공립보다 사립 특수학교가 경향 각지에 많이 설립되는 실정이었다. 사립 특수학교 설립상황²⁷⁾은 <표 2>와 같다.

<표 2> 1960년대 까지의 특수학교 설립상황(사립)

장애별	년도	설립시 ·도별	학교명	비 고
맹학교	1946	대구	대구광명학교	구 대구맹아학교(맹부)
	1951	전북	전북맹아학교	
	1952	충북	청주맹학교	
	1954	강원	강원명진학교	
	1954	광주	광주세광학교	
	1954	전남	은광학교	
	1955	충북	충주성모학교	
	1956	인천	인천해광학교	
	1960	서울	서울한빛학교	
	1960	서울	서울한빛학교	

26)『문학관』,7576.

27)문교부,『특수교육운영자료』,1970.참조

농 학교	1946	대구	대구영화학교	구 대구맹아학교(아부)
	1955	인천	인천성동학교	구 인천농화학교
	1955	충북	충주성심학교	구 충주성심농학교
	1956	광주	광주인화학교	구 전남농학교
	1958	대전	대전원명학교	
	1960	전북	전북혜화학교	구 전북농학교
	1960	전북	군산명화학교	구 군산농화학교
	1962	경기	수원서광학교	구 수원농아학교
	1963	서울	한국구화학교	
	1965	부산	혜성구화학교	
	1966	부산	부산구화학교	
	1966	경북	안동진명학교	구 안동농아학교
정신박약	1966	대구	대구보명학교	
학 교	1968	서울	서울명수학교	
지체부자유	1952	서울	삼육재활학교	
	1959	서울	연세재활학교	
	1962	대전	성세재활학교	
	1966	대구	대구보건학교	

위의 사립 특수학교 설립 상황을 보면, 맹학교가 9개교, 농학교가 12개교, 정신지체학교가 2개교, 지체부자유학교가 4개교로 사립이 훨씬 앞서고 있다. 그 이유는 6.25동란 후 장애아동의 사회복지 시설이 교육부의 특수학교 설립권장 정책에 힘입어 특수학교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1961년 이후의 신설학교는 맹·농·지체부자유·정신박약 등 교육의 대상별로 분화되어 설립되었다. 그러나 설립 이후 한국구화학교를 비롯 몇 학교는 농과 정신박약을 동시에 교육하는 곳이 생겼다. 이는 특수교육의 발달과정상 역행되는 현상이었다.

1963년 11월에는 한국사회사업대학(현, 대구대학교 전신)과 한국특수교육연구협회(한국특수교육협회 전신)에서 장애자에게도 고등교육의 길을 마련코자 교육법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마침내 교육법 제143조에

“특수학교에는 특수학교를 졸업한 자 중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목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병설할 수 있다”²⁸⁾고 개정됨에 따라 1964년 3월에 서울맹학교와 서울농아학교 고등과를 설치하게 되었다.

그리고 맹학교의 증가는 대부분 복지시설의 전환이었다. 그리고 초등교육을 위주로 하고 중등과를 설치한 학교가 4개교, 고등과를 설치하고 있는 학교는 서울맹학교, 청주맹학교, 대구광명학교 등 3개교 뿐이다.

농학교는 다른 어느 영역의 학교에 비해 가장 많다. 학교의 증가는 맹학교에서와 같이 복지시설이 사립학교에로 전환한 것이 대부분이다. 공립학교로는 경남국민학교의 설립뿐이다. 중등과를 설치한 학교는 8개교이고 고등과 설치학교는 서울농아학교와 대구영화학교로서 2개교뿐이고 그 외는 초등과정 뿐이다.

(3) 特殊教育課程

1967년 4월에 교육부령 제181호로 맹·농학교(초·중·고등부)의 교육과정이 제정·공포되었다. 그 교육과정 제정의 취지에서 특수학교의 교과는 문교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의하여 특수학교를 위한 교육과정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기타의 장애자를 위한 학교도 이 교육과정 구성의 취지를 살려 운영하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일반학교 교육과정은 이미 1955년에 제정되었고, 1963년에 자주성, 생산성, 유용성의 강조를 개정의 취지로 하여 1차 개정이 이루어져 있었다. 거기에 힘입어 특수학교 중 우선 맹학교와 농학교의 교육과정이 먼저 제정됨으로써 특수교육도 체계화와 내실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교육과정의 구조는 교과와 도덕, 특별활동 등 3영역으로 편성하여 일반학교의

28)「교육법」, 제143조

구조와 같이 편성하였다.²⁹⁾

제정된 교육과정의 구성방침은 ①일반성과 특수성의 조화, ②전인성의 강조, ③자기실현의 강조, ④유용성과 생산성의 강조에 두는 한편 그 조직 및 운영에 있어서는 ①합리성의 강조, ②개별성의 강조, ③운영상의 융통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법」은 특수학교의 설치를 규정하였고 특수학교의 교과는 문교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1967년까지 특수학교를 위한 교육과정이 마련되지 못하여 각 특수학교에서는 일반 초·중·고등학교 및 실업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준용하여 각 학교별로 관례나 경험에 의지하여 교육과정이 운영되어 왔으므로 교과의 종류나 교과시간 배당은 물론이요 교과지도 목표나 내용에 있어서도 특수학교의 특수성을 발휘하지 못한채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정신박약자나 기타의 심신장애자를 위한 학교의 교육과정은 당분간 일반학교 교육과정을 준용하였으며 실정에 맞추어 맹학교와 농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2) 特殊教育行政 및 財政

(1) 特殊教育行政組織

광복 후 특수교육행정에 관하여는 1945년 10월에 일제에 의해 설립된 제생원 맹아부가 국립맹아학교로 교명이 개칭되고, 미군정청 보건후생부 관할로서 운영되었다. 1946년 겨울 미군정청에서 맹아교육 고문관으로 미 국인 윌튼을 파견하여 학급재편성과 학제를 변경하고, 1948년 2월에는 보

29) 문교부, 『특수학교 교육과정』, 1967, p.1.

건사회부 관할로부터 문교부관할로 이관하여 교명을 국립맹아학교라 칭하게 되었으며, 외부적으로는 교육기관 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나 내부적으로는 많은 운영난을 겪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동년 11월 4일 대통령령 제22호에 의하여 문교부 보통교육국에 특수교육과를 설치³⁰⁾한 것이 특수교육 행정조직의 시초이다. 특수교육부의 분장사무는 재외 교민의 교육, 맹·농학교, 유치원, 서당, 사설강습소 기타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했다.

그후 여러 차례에 걸쳐 특수교육행정의 직제가 바뀌어졌는데 1951년 4월 12일 대통령령 제473호에 의해서 특수교육과는 보통교육국에서 고등교육국으로 이관³¹⁾되고, 그 분장사무는 국제연합 교육·문화·과학기구, 교수와 학생의 외국유학, 외국 교환교수, 맹·농학교, 학회 학술진흥, 국민사상의 연구지도, 재외 국민의 교육, 기타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었다. 1955년 2월 17일 대통령령 제1000호에 의하여 특수교육과는 없어지고, 특수교육에 관한 업무는 보통교육국 중등교육과에서 관장³²⁾하게 되었다. 중등교육과의 분장사무는 고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 특수교육, 서울특별시와 도교육의 재정 등이었다. 그후 특수교육 영역을 분화할 수 있는 맹농아교육 분리를 위한 대통령령이 1959년 1월 14일에 공포되었다. 다시 1961년에는 각령 제180호에 의하여 보통교육국에서 학교관리국 소관으로 바뀌었다.³³⁾

1963년 12월 17일 각령 제1737호에 의해 문교부 기구가 대폭 개편됨에 따라 특수교육 업무가 보통교육국 교육행정과에 설치된 특수교육계로 이관³⁴⁾되고, 여기서는 주로 특수학교 설치와 폐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

30)「대통령령」, 제22호

31)「대통령령」, 제473호

32)「대통령령」, 제1000호

33)「각령」, 제180호

다.

그 후 1970년 1월 26일 대통령령 제435호 에 의하여 특수교육계마저도 그 제도가 폐지되고 특수교육은 보통교육국 교육행정과 업무 소관으로 흡수³⁵⁾되었다. 교육행정과의 특수교육 업무는 주로 특수학교의 설치, 폐지 및 지도감독이었다.

1955년 이전까지는 특수교육과가 있었으나 업무 내용에 있어서는 심신 장애자에 대한 특수교육 뿐만 아니라 타업무도 관장하고 있어서 단위과의 구실을 다하지 못했으며, 특수교육과는 아니지만 특수교육에 관한 독립된 업무를 관장해 온 것은 1963년 12월부터 1970년 1월까지 특수교육계로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그 이후는 특수교육계마저도 없어지고 타업무와 흡수되고 말았다.

다시말해 1955년 이전까지는 문교부 직제 속에서 특수교육과가 있었으나 관장업무가 특수교육뿐만 아니라 타업무도 관장하고 있었으므로 단위과의 구실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비록 과단위는 아닐지라도 특수교육에 관한 독립된 업무를 관장하게 된 것은 1963년 12월부터 1970년 1월 이전까지의 교육행정과 특수교육계라고 할 수 있다.

(2) 特殊教育財政

특수교육의 재정은 1950년대까지는 국립특수학교에서 조차 국가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1959년 국립맹아학교가 맹,농아 학교로 분립하기 위한 교사 건축을 위하여 학부모들의 모금으로 교사 신축공사를 착공하고 완공하기까지 자금난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많았다.³⁶⁾ 그와 같은 실정에서 국

34)「각령」, 제1737호

35)「대통령령」, 제435호

가의 재정형편이 다소 개선된 1963년 이후부터 교육부가 특수학교의 육성을 위해서 사립특수학교 교원의 인건비 일부와 시설 보조비를 매년 보조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국·공립 특수학교를 포함한 모든 특수교육 재정은 매우 빈약하였다.

3) 特殊教育政策

(1) 第2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 特殊教育部門 計劃(1967~1971)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재건에 힘쓰는 데 따라 특수교육의 계획적인 실시를 위하여 특수교육 발전계획도 입안·추진하게 되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5년 이상의 중·장기 교육정책 중 특수교육 부문의 정책으로서 1967년 9월 문교부는 특수교육 5개년계획을 마련하였다. 그것은 1972년을 목표년도로 하고 목표년도까지 특수학교 초등부의 취학률을 50%선까지 높이고 특수학과와 특수학급의 신설, 특수아동에 대한 초등의무교육의 보급 등을 골자로 한 것이었다.³⁷⁾

문교부는 1967년에 특수교육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특수학교와 학급의 신설, 특수학교 초등과정의 의무교육 실시, 교원의 확보,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강조를 두었다. 그러나 본 계획은 하나의 계획으로서 구상만 제시한 셈이고, 당시 3공화국의 경제발전 제1주의라는 확고한 방침으

36)국립서울맹학교,『개교 80년사』,서울맹학교,1993.pp.12-16.

37)김동연, “세계 속의 한국특수교육 : 역사적 전개과정”, 『특수교육학회지』,제6권,1985,pp.159-167.

로 말미암아 실제 추진에 있어서는 행정적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어지는 등 지지부진하게 되고 말았다.

그래도 본 계획 기간 동안 농·정신박약학교로서 경남혜림학교, 정신박약학교로서 대구남양학교가 공립으로 설립되었고, 대전맹학교가 사립에서 공립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 또한 1971년 대구 칠성국민학교에 정신박약아 및 학습지진아를 대상으로 특수학급이 최초로 설치³⁸⁾되어 교육가능 정신지체아를 위한 특수학급의 출발점이 되었다.

(2) 『長期綜合教育計劃案』

1969-70년의 장기종합교육계획안³⁹⁾은 특수교육의 문제점을 지적, 1)이념 정립의 미흡, 2)행정의 공백, 3)사학위주의 경영과 재정의 불안정, 4)우수아교육의 등한시 등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특수교육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교육계획의 윤곽을 제시하였다.⁴⁰⁾

①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지체부자유자, 병약자, 중복장애자, 정신박약자, 언어장애자, 정서장애자 등을 대상으로 특수교육의 기회를 확충하되 점차 공교육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이를 추진한다.

② 직업훈련을 강화한다.

③ 정규학교 내에서의 특수교육과 특수교육기관에서의 특수교육의 형태를 구분하고 함께 이를 추진한다.

④ 특수교사를 확보하고 이들을 우대한다.

38) 한국특수교육협회, 『제1회 특수학급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미나 보고서』, 1973. 참조

39) 장기종합교육계획심의회, 『장기종합교육계획안(1972-86)』, 국무총리실 장기종합교육계획심의회, 1970, pp.1023-1027.

40) 상계서, pp.459-470.

⑤ 특수교육 대상자의 유형별로 판별기준을 정하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마련한다.

⑥ 특수교사의 양성은 4년제 대학에서의 양성을 원칙으로 하며 그 우대책을 강구한다.

⑦ 유형별로 프로그램을 한다.

⑧ 공립의 특수학교를 확충하고 특수교육시설의 기준을 마련하며 사학에 대한 보조를 실시한다.

이들 특수교육 발전계획은 1970년대 이후 특수교육에 대한 공적 관심의 증대와 특수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의 조성을 의미하였다. 교육발전 계획 속에 특수교육의 진흥을 다루었다는 것 자체가 정책적인 관심의 표명이라 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교육계획 발전은 정책결정에 선행되는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이다.

4) 特殊教育 敎員 資格制度 및 養成

(1) 特殊敎員養成

광복 이후부터 1960년대 말까지 특수학교 교원 자격제도 및 양성에 관하여 자격제도는 「교육법」 제75조에서 “특수학교는 교장, 교감, 교사를 둔다”⁴¹⁾고 규정하고 1953년 법률 제285호로 교육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동법에는 중앙교원 자격 검정위원회의 검정을 거치거나 특수학교의 사범과를 졸업한 자만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특수학교 교사의 구분을 「국민학교 특수교사」, 「중학교 특수교사」로

41) 「교육법」, 제75조

구분하였다. 같은 해 대통령령 제824호로 새로 제정된 교육공무원 자격검정령에서는 특수교육 교사의 자격구분을 1급 정교사, 2급 정교사, 준교사로 세분하고 모든 자격증의 효력을 10년으로 제한하는 등 자격제도 체계를 개정하였다.

1963년 8월 법률 제1387호에 의거하여 사범학교제를 폐지하고 국민학교 교사는 교육대학(2년)에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사는 사범대학(4년) 또는 4년제 대학(교직과정 이수)에서 양성토록 개정⁴²⁾됨에 따라 특수학교 교사 자격도 1963년 12월 법률 제1463호로 교육공무원법의 개정⁴³⁾을 통하여 대학 또는 초급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특수학교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는 1급 정교사, 특수학교 교사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는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였다.

1964년 2월에는 종래의 교육공무원 자격검정령이 폐지되고, 교원 자격검정령이 다시 제정되어 특수학교 초등교사 자격증은 맹·농아를 표시하고, 중등교사 자격증은 맹·농아를 표시한 다음에 괄호 안에 전공과목을 표시하게 되어 특수교육 교사 자격제도가 장애영역별·교과목별로 세분되었다. 44) 그 후 1964년 7월 대통령령 제18호로 교원자격검정령의 1차 개정시에 정교사와 준교사의 자격구분이 폐지되고 「특수학교 교사」로 통합되었고, 1969년에는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 표시 영역이 종전의 맹·농 영역에서 정신박약, 지체장애 영역까지 확대⁴⁵⁾되는 변천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특수학교 교사양성은 1950년 6월 국립맹아학교에 사범과(3년제)를 설치하여 3년간 소정의 과정을 마친 자에게 교사 자격증을 부여한 것이 한국 특수학교 교사 양성의 시초였다. 그 후 1954년 4월에는 일반 고등학교

42)「법률」, 제1387호

43)「법률」, 제1463호

44)「교원자격검정령」, 1964.2.26.

45)「교원자격검정령」, 1969.1.22.

졸업자를 입학자격으로 하는 보통 사범과(1년제)를 설치하여 일반인들이 특수학교 교사가 되는 양성과정을 두었으나, 1964년 4월에 사범과와 보통 사범과 모두 폐지되었다. 이 제도에 의해 맹과 123명, 농과 230명이 배출되었다.

1954년 국립맹아학교 사범과 교육과정은 <표 3>과 같다.

<표 3> 국립맹아학교 사범과 교육과정

명칭	기간	내 용
사범과	3년	*맹부 : 국어(4), 수학(2), 사생(3), 과학(3), 영어(3), 교육(5), 의학(4), 진단학(2), 경구(2), 마찰(4), 보건(2), 음악(4), 가사(2) - 주당 37시간 - *농부 : 국어(4), 수학(3), 구화(1), 사생(9), 과학(2), 영어(2), 교육(3), 보건(3), 미술(2), 공학(3), 제도(2), 실습(6) - 주당 37시간 -
보통 사범과	1년	국어(4), 수학(3), 사생(4), 과학(2), 영어(3), 교육(7), 점자(2), 구화(1), 수화(1), 미술(2), 보건(3), 음악(2)

대학에서 특수학교 교사 양성은 1961년에 대구대학교(당시 한국사회사업대학) 특수교육과가 처음으로 설치되었으나 5.16당시 정원 600명 이하 대학에 대한 대학정비령에 의해 그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고, 1962년에 초급대학으로 개편되었다.

1964년에 와서 특수교육과의 특수성이 인정되어 다시 4년제로 개편하게 되므로써 한국 특수학교 교사 양성과정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 특수학교의 수가 적어 특수학교 교사 수요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특수교육과 졸업자 중 일반학교 교사자격증을 희망하는 자에게 1976년 이전까지는 일반학교 교사자격증을 부여하기도 하였다.⁴⁶⁾

46) 김병하, 『특수교육 교사양성제도 및 개선세미나 보고서』,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1988, pp.65-104.

(2) 特殊教員資格

자격증 제도를 보면 특수학교 교사자격이 법규로 처음 명문화된 것은 1949년 「교육법」⁴⁷⁾ “제9절 특수학교”란이 설정된지 3년 후인 1953년 교육공무원법⁴⁸⁾이 신규 제정되면서 부터이다. 초기 특수교사 자격 기준은 “특수학교는 장애가 있는 자에게 국민학교, 중학교에 준한 교육과 그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을 가르침을 목적으로 한다.”는 「교육법」 규정⁴⁹⁾에 따라 교육공무원법상에는 교사의 자격을 정교사(1급, 2급), 준교사, 특수교사, 양호교사로 나누어 <표 4>의 자격기준에 달하는 자로서 문교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라고 한정하는 동시에 특수교육 교사는 특수교사, 국민학교 특수교사로 기준을 구분하였다.



47) 「법률」, 제86호.

48) 법률 제285호.

49) 교육법 제143조

<표4> 초기 특수교사 자격 기준

	고등학교	중학교	국민학교
정교사 (1급)	생략	생략	생략
정교사 (2급)	생략	생략	생략
준교사	생략	생략	생략
특수교사	1. 중앙교원자격검정위원회에서 고등학교 특수교사 자격 검정을 받은 자 ① 실업과, 과학과에 대한 특수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자 ② 예능과, 보건과에 대한 특수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자	1. 중앙교원자격검정위원회에서 중학교 특수교사 자격검정을 받은 자 ① 실업과, 과학과에 대한 특수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자 ② 예능과, 보건과에 대한 특수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자 2. 특수학교 사범과 졸업자	1. 중앙교원자격검정위원회에서 국민학교 특수교사 자격검정을 받은 자 ① 실업과, 과학과에 대한 특수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자 ② 예능과, 보건과에 대한 특수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자 2. 특수학교 사범과 졸업자

이때는 중앙교원자격 검정위원회의 검정을 거치거나 특수학교 사범과를 졸업한 자만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1953년 신규제정한 교육공무원 자격검정령⁵⁰⁾은 위의 특수교사 자격을 1급정교사, 2급정교사, 준교사로 세분시키고 모든 자격증의 효력을 10년으로 하는 등 자격제도 체제를 성립시켰다. 또한 1963년 사범학교제를 폐지하고 국민학교는 교육대학에서 일반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원은 4년제 대학에서 양성토록 「교육법」을 개정⁵¹⁾함에 따라 특수학교 교사자격도 교육공무원법에서 개정⁵²⁾을 보게 되었다.

50) 「대통령령」, 제824호.

51) 「법률」, 제1387호.

52) 「법률」, 제1463호.

즉 대학 또는 초급대학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특수학교 교직과정을 이수한 경우는 1급 정교사 자격증을, 특수학교 교사의 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는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 1964년에는 종전의 교육공무원 자격 검정령을 폐지하고 교원자격 검정령을 신규제정⁵³⁾하여 대체하였다.

동령 별지 제2호에 의하면 특수학교의 초등교사는 맹,농아를 표시하고 특수학교의 중등교사는 맹,농아의 표시 다음에 괄호를 만들어 중등학교란의 전공과목을 표시하도록 되어있어 특수교사 자격제도가 장애영역별, 교과별로 세분, 전공화되었으며 장애인 교육에 비교적 높은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교육자격 검정령 1차 개정⁵⁴⁾ 때는 정교사(1, 2급), 준교사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특수학교교사”로 통합하여 자격제도상 상당한 퇴보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1969년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표시과목으로 “정신박약”과 “지체장애”를 추가 신설⁵⁵⁾하였음은 종전 맹,농의 영역에서 실시하고 있던 것을 정신박약, 지체장애의 영역까지 확대하여 장애별 교육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 하겠다.

第2節 韓國特殊教育行政의 發展

1. 第2期 韓國特殊教育行政의 特徵 및 概觀

53)「대통령령」, 1649호.

54)「대통령령」, 제1649호.

55)「대통령령」, 1878호.

한국 특수교육의 발전은 1970년대 이후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증대되고 공적 책임이 확대되면서 비로소 이룩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1960년대까지의 교육발전과 국민의 재정능력의 증대를 기반으로 하여 가능해진 것이었다. 또한 1969-70년에 작성된 「장기종합교육계획」은 70년대 이후의 특수교육에 대한 공적 관심과 책임의 증대를 지향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문교부는 1974년부터 전국의 각 시군에 1개학급씩의 특수학급을 설치케 하였으며 당년에 177학급이 신설되었다. 이에 앞서 경북 등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의 확충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이 있었다. 그리고 일반학교 내에서 특수교육을 확충하는 방안의 추진은 특수교육의 진흥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실이었다.

특수교육의 진흥에 있어서 특수교사의 양성은 그 선행조건이었다. 대학에서의 특수교육 담당의 교사양성은 1961년 한국사회사업대학에 특수교육학과가 설치된 것이 효시가 되었다. 그후 1971년에는 단국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에도 특수교육학과가 설치되었다. 이들은 모두 사립대학으로서 한국 특수교육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문교부는 또한 1960년대 말경부터 현직교사들 가운데 특수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현직연수를 통해서 16주 정도의 재교육을 통하여 양성하였으며 그것이 후일 1970년대 이후의 특수교육의 확대를 위한 기초가 되었다

2. 第2期 韓國特殊教育行政의 主題

1) 特殊教育制度

(1) 特殊學校

1960년대 전반기까지는 주로 맹·농학교가 설립되는 등 특수교육기관의 설립이 매우 부진하다가 1970년대에 들어서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가장 많은 정신지체에 대한 교육의 가능성과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정신지체 특수학교의 설립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60년대에 2개에 불과했던 정신지체 학교가 15개 학교로 대폭 늘어났다.⁵⁶⁾

<표 5> 연도별 특수학교 설립현황

장애별	설립일	학교명	비고
시각장애학교	70.12.15	서울한빛	시각+청각+정신지체+지체부자유
	74. 4. 8	제주영지	
	74.12.26	부산맹	
청각장애학교	70. 4.27	부산구화	청각+정신지체
	72. 5.24	해성구화	
	74.11.12	춘천계성	
	79. 4. 2	목포소림	

56)문교부,『특수교육백서』,1981.pp.31-116.

정신지체학교	70. 2.19	혜인	정신지체+지체부자유+정신박약
	71. 3. 2	서울인강	
	71.12.11	안동영명	
	71.12.30	보령정심	
	72.11.30	자혜	
	74. 1.15	부산혜성	
	74. 3. 5	인천예림	
	74.12.11	홀트	
	74.12.13	다니엘	
	75. 2.15	성베드로	
	76.12.15	부천혜림	
	78. 4.29	광주선명	
	79.11. 8	청주혜원	
79.12.12	서울충현		
79.12.29	거제애광		
지체부자유학교	73. 2.20	대구성보 대구보건	

정신지체 특수학교의 연도별 설치현황표를 보면 1974년 특수학급이 일반국민학교 내에 처음으로 설치된 시기를 기점으로 정신지체 아동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를 맞게 되었고 이러한 영향을 받아 사립학교가 중심이 되어 매년 증가되는 특징을 보였다. 정신지체교육이 1970년대까지는 주로 사립기관에 의존해 왔음을 알 수 있는데 1970년대에 새로 설립된 학교는 공립이 3개교인데 비해 사립은 12개 학교로서 사립학교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2) 特殊學級

특수학급은 특수학교에 수용하는 대상보다는 가벼운 아동을 수용하는 기관이다. 특수학교와 같이 완전분리된 집단이 아니라 정성아와 같은 학

교 구내에서 생활하면서 일반학급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아동을 필요에 따라 특수학급을 구성함으로써 정상적 인간관계와 효과적 학습수행에 다같이 이익을 주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 특수학급은 장애에 따라 약시학급, 난시학급, 언어장애학급, 병약학급, 정신박약학급 등이 있으나 다른 나라의 경우보다 수적으로 정신박약학급이 훨씬 많다.

특수학급의 설치의 법적 근거로는 「교육법」 제145조, 「교육법시행령」 제177조 를 들 수 있다. 「교육법」 제145조에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는 필요한 경우 장애인인 학생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⁵⁷⁾”라고 규정하므로써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급을 설치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교육법시행령」 제177조에서는 “국민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인가 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⁵⁸⁾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정책발전은 등한히 되어 왔다. 특수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운이 점차 조성되면서 1970년대에 이 규정이 빛을 보게 된 것은 하나의 획기적인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

1971년에 처음으로 대구 칠성국민학교에서 정신박약아 가운데 교육이 가능한 아동(educable mentally retarded)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었다. 일반 국민학교에서 특수교육이 시작된 효시로서 그 의의를 과소 평가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어서 1970년대 초에 서울 월계국민학교에 약시학급이 설치되었고 대구 동인국민학교와 침산국민학교에 정박아를 위한 특수학급이 설치되었다.

대구의 사회사업대학의 영향을 받았으며 특수교육 발전에 있어서 타지역에 앞서 나가던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경북교육위원회는 특수교육의 발

57)교육법 제145조

58)「교육법시행령」, 제177조

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여 1972년부터 실천에 옮겼다. 그리하여 1972년에는 기존의 3개 특수학급 외에 15개 국민학교에 정신박약아 특수학급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1973년에는 다시 15개 특수학급을 증설하였다.

1974년에는 문교부의 계획에 의하여 전국시군에 1교씩의 특수학급을 설치하게 되었다. 서울과 부산은 자체예산에서 각 교육청마다 1개 학급씩, 서울 4학급, 부산 2학급을 설치하게 되었고 기타 도에는 문교부에서 1학급 당 50만원의 경비를 부담해 경기도에 24개, 강원도에 19개, 충북 12개, 충남 17개, 전북 16개, 전남 26개, 경북 29개, 경남 25개, 제주도에 3학급을 설치하게 되었다. 그 후에도 계속 특수학급이 증설되었으며 1979년에는 전국적으로 351개로 총 수용 학생수는 6,107명에 이르게 되었다.⁵⁹⁾ 그래서 1974년을 기점으로 한 이 시기를 특수학급 교육의 “정착기”로 볼 수 있다.

이로써 종전에는 일부 지역에서 자선단체나 종교단체가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특수교육의 기회를 마련했던 것과는 달리 공적 책임하에 특수교육의 기회가 획기적으로 확대 제공된 셈이 되었다. 그것은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하였다.

(3) 特殊教育課程

한국에서의 특수교육은 공식적으로는 영재를 제외하고는 장애자의 구분에 따라서 ①시각장애자교육(맹교육, 약시교육), ②청각장애자교육(농교육, 난청교육), ③정신지체아교육(교육가능아교육, 훈련가능아교육), ④지체장애아교육 등을 구분하고 이들 4개 분야에서 교육과정의 운영을 제시하고 있다.

59)문교부,『특수학급 경영, 장학자료 제147호』, 참조.

이와 같은 교육과정은 1967년 4월 15일 제정의 문교부령 제181호로 맹학교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의 교육과정이 별책 5로, 농학교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교육과정이 별책 6으로 공포⁶⁰⁾되었으며 1974년 1월 31일에 문교부령 제334호로 정신박약아 초등부 교육과정이 공포⁶¹⁾되었다. 그리고 1977년에 맹학교 교육과정이 개정 공포되었으며 1978년에는 정신박약아 특수학급 교육과정이 만들어졌고 전체적인 특수학교 교육과정이 1979년에 제정되었다.⁶²⁾

70년대 들어 주목되는 교육과정의 변화 가운데 하나가 1973년의 제1차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내용이다. 전반적인 내용수준이 일반교육과정과 비슷하였으며 일반목표의 설정에서 장애의 적극적인 개선과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제시보다는 포괄적인 목표로 진술되었다. 편제 및 시간배당은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으로 구성되었으며 고등부는 보통교과와 직업교과로 구분되었고 운영지침은 계획·지도·평가 및 기타로 나뉘어졌다. 각론에서는 내용 수준이 높았고 학습량도 많았다. 이 교육과정에 내재된 구체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체제가 장애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이의 보상을 위한 내용과 수준에 맞는 구성이 되지 못했고, 기본방침과 일반목표의 체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편제 및 시간배당에서는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장애의 보상을 위한 청능, 말읽기, 발어 및 감각훈련 등의 지도시간을 확보할 수 없었다. 셋째, 시간배당에서 시간배당 기준이 적절치 못했다. 넷째, 장애의 보상을 위한 지도의 운영지침, 중복장애자의 지도에 대한 운영지침,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한 개별

60)『문교부령』, 제181호

61)『문교부령』, 제1334호.

62)『문교부령』, 제424호

화지도 운영지침이 제시되지 못했다.⁶³⁾

문교부가 제정한 교육과정은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전국 획일적인 기준의 제시 자체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어떠한 최저 기준의 제시는 바람직한 것으로 점차 신축성있는 기준의 제시로 학교에 의한 운용의 묘를 살리도록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1960년대 후반 이후 1970년대에 걸쳐서 문교부가 여러 종류의 장애자를 구분하고 교육과정의 기준을 초중고 등 학교의 수준에 따라서 제시한 것은 특수교육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수교육에 대한 공적 관심의 증대와 책임의 심화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特殊教育政策

(1) 第3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 特殊教育部門 計劃(1972~1976)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 중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특수한 조건없이는 취학할 수 없는 아동, 즉 지체부자유자, 맹·농아 및 정신박약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강화함에 있어 ①시·도별 1개교 이상을 계획기간 동안에 확보하기 위하여 공립 5개교 외에 11개교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시설비 전액과 일반학교에 비하여 더 필요로 하는, 특수한 소요 경비를 유지·관리비로 산정하며, ②시·군단위로 특수학급을 1개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기설 학교에 부설하되, 교실 건축, 교원 봉급 등 기본 경비는 일반 경비에 포함시킨다. 특수아동 학급은 주로 정신박약아를 대상

63)대구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특수학교 교육과정 개정 기초연구(VOL 1- 4), 대구: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1987. p.122.

으로 하기 때문에 기숙 시설을 요하지 않으므로 다만 운영상의 특수 경비만을 추가 계상한다. ③교과서 공급, 판별에 관련된 경비 등 소요 경비를 계상하여 특수아 교육에 만전을 기한다. ④특수아동을 위한 사립 학교 설립 및 경영을 적극 권장하고, 종전의 사립 학교에 대한 보조비를 증가시킨다. ⑤상기 제 소요경비는 일체 의무교육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⁶⁴⁾ 그러나 실제 추진면에 있어서는 그에 미치지 못하였다.

3) 特殊教育 敎員 資格制度 및 養成

1973년 교원자격검정령⁶⁵⁾을 개정하여 중등학교 교사자격증 표시과목에 <특수교육, 시청각교육, 전자계산, 철도운전, 철도업무>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기존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으로는 진출기회가 없으므로 사범대학은 중등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라 하여 부전공을 이수하여 진출기회를 배려하자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1974학년도에서 1976학년도까지 단국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졸업생들은 <중등학교, 2급정교사, 특수학교, 부전공 00 >으로 표시된 자격증이 주어졌다.

64) 교육부『특수교육백서』, 1993, pp.248-254.

65) 문교부령 제4222호.

第3節 韓國特殊教育行政의 擴大

1. 第3期 韓國特殊教育行政의 特徵 및 概觀

한국특수교육행정 제3기는 시기적으로 1977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이다.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이 점차 늘어나고 1977년에 특수교육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공포되었고 1984년에는 특수교육진흥 7개년 계획이 수립됨으로써 특수교육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특수교육진흥법」은 1987년에 개정되었고 1994년에 전면적으로 개정됨으로써 특수교육의 질적·양적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특수교육 발전의 새로운 한 세대를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 시점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장애아동을 위한 공교육의 추진은 이제 막 출발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1977년의 「특수교육진흥법」 제정은 특수교육정책의 획기적 진전을 의미하였다. 1978년에 동법시행령이 공포됨으로써 그 시행을 뒷받침하였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고 그것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확대를 통해서 종래에는 기회를 얻지 못했던 특수아동들에게 새로운 교육기회를 주었다. 뿐만아니라 특수교육의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의 추진,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개발, 교사의 양성과 연수의 추진 등을 가능케 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분위기 조성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2. 第3期 韓國特殊教育行政의 主題

1) 特殊教育制度

(1) 「特殊教育振興法」

1970년대의 경제적 성장과 국민생활의 향상은 그동안 소홀했던 여러 영역에 대한 지원에 힘을 기울이게 하였다. 특히 헌법에 명시된 국민학교 6년 교육의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은 지체부자유아나 정신박약아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하였고 교육법에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을 설치, 운영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천에 인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교부는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앞으로의 특수교육의 발전에 전기를 마련하였다. 동법의 목적은 “시청각장애자 등 심신장애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진흥하여 그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생활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⁶⁶⁾고 되어 있다.

1977년에 「특수교육진흥법」(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3호)이 제정되고 이어서 1978년에 동법시행령(1978년 8월 30일, 대통령령 제9151호)이 제정 공포되어 장학금의 지급, 학비감면, 직업보도교원에 대한 연수, 그리고 이들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점자도서관의 설치 등 특수교육진흥을 위한 여러 복지정책들이 반영되었으며 1978년 12월 30일 문교부령 제435호로 동법 시행규칙이 공포되었다. 이는 특수교육의 진흥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의 진전을 의미하였다. 이 법은 대한교련 산하에 조직된 한국특수교육협회 등이 그 추진세력이 되었으며 1979년부터 시행에 옮겨진 셈이

66) 「특수교육진흥법」, 제1조

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특수교육의 여건의 변화에 따라 동법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16호로 전면 개정, 공포되었다.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⁶⁷⁾으로 하는 동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⁶⁸⁾를 비롯하여 특수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⁶⁹⁾, 의무교육⁷⁰⁾, 조기특수교육시책 강구⁷¹⁾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⁷²⁾, 입학에 있어서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차별금지⁷³⁾, 순회교육⁷⁴⁾, 통합교육⁷⁵⁾, 개별화교육⁷⁶⁾, 보호자교육⁷⁷⁾, 치료교육⁷⁸⁾, 직업교육⁷⁹⁾, 전공과의 설치⁸⁰⁾, 특수학교교원의 자질향상⁸¹⁾, 장학금지급⁸²⁾,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⁸³⁾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수교육진흥법」은 한마디로 특수교육을 위한 기준의 확립과 지원의 준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 구체적인 시책방향을 제시한 것이었다. 특히 주목할만한 사실로서

- 67) 「특수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 제1조
68) 「특수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 제3조
69) 「특수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 제4조
70) 「특수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 제5조
71) 「특수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 제8조
72) 「특수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 제10조
73) 「특수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 제13조
74) 「특수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 제14조
75) 「특수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 제15조
76) 「특수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 제16조
77) 「특수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 제17조
78) 「특수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 제18조
79) 「특수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 제20조
80) 「특수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 제21조
81) 「특수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 제23조
82) 「특수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 제24조
83) 「특수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 제2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판별기준이 세워졌으며 장애의 구분에 따라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수용될 대상자의 판별기준을 따로 정하였다. 그것은 최근에 있어서 특수교육의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준거를 제시한 점에 있어서 그 의의가 컸다. 그와같은 기준의 확립과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이 의무화되었으며 그것은 특수교육의 공교육화에 박차를 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특수학교

1993년 4월 현재 특수학교의 수는 106개교로, 그 중 국·공립 특수학교는 32%인 34개교이며, 나머지 72개교(68%)가 사립 특수학교이다. 학교 수로는 과거 20년전인 1972년의 38개교에 비해 270%나 늘어난 106개교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도 취학기회의 부족으로 54%에 가까운 심신장애 학생들이 특수 교육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특수교육기관의 증설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⁸⁴⁾

현재 설치된 대부분의 특수학교는 초등부, 중학부, 그리고 고등부 과정을 병설하고 있으며, 1993년 4월 현재 유치부 과정이 67개교, 초등부 과정이 104개교, 중학부 과정이 94개교, 고등부 과정이 69개교에 설치되어 있다.

설립별 및 시·도별 특수학교 현황을 보면 <표 6>, <표 7>과 같다.

84)안병준, "한국특수교육의 회고", 『특수교육학회지』, 제15집, 제1호.1994.p.164.

<표 6> 설립별 특수학교 현황

장애별	설립별			
	국립	공립	사립	계
시각장애	1	2	9	12
청각장애	1	3	11	15
정신지체	1	17	29	47
지체부자유		3	10	13
정서장애			3	3
청각·정신지체		1	7	8
청각·지체부자유		1	1	2
정신·지체부자유		3	2	5
시각·청각·정신지체부자유		1		1
계	3	31	72	106

<표 7> 시·도별 특수학교 현황

장애별 설립별 시도별	시각	청각	정신	지체	정서	청각	청각·	정신·	시·청	계
	장애	장애	지체	부자	장애	정신	지체	지체	각·정	
서울	국립	1	1							2
	공립			1						1
	사립	1	2	7	2	1	1	1		15
	계	2	3	8	2	1	1	1		18
부산	국립									
	공립	1	1	1	1					4
	사립		1				1	1		3
계	1	2	1	1		1	1		7	
대구	국립									
	공립			1	1					2
	사립	1	1	2	1	1				6
	계	1	1	3	2	1				8
인천	국립									
	공립			1						1
	사립	1	1	1	1					4
	계	1	1	2	1					5

광주	국립								
	공립			2					2
	사립	1	1		1				3
	계	1	1	2	1				5
대전	국립								
	공립	1							1
	사립				1		1		2
계	1			1		1		3	
경기	국립			1					1
	공립			1					1
	사립		2	9	1				12
	계		2	11	1				14
강원	국립								
	공립		1	3					4
	사립	1							1
	계	1	1	3					5
충북	국립								
	공립			1	1				2
	사립	2	1	1	1	1			6
계	2	1	2	2	1			8	
충남	국립								
	공립			2					2
	사립			1					1
계			3					3	
전북	국립								
	공립		1	1			1		3
	사립	1		1	2		1		5
	계	1	1	2	2		2		8

전남	국립									
	공립			2						2
	사립	1	1	3						5
	계	1	1	5						7
경북	국립									
	공립							2		2
	사립		1	1		3				5
	계		1	1		3		2		7
경남	국립									
	공립			1			1	1		3
	사립			2			1			3
	계			3			2	1		6
제주	국립									
	공립							1		1
	사립			1						1
	계		1					1		2
총계	12	16	46	13	3	8	2	5	1	106

(3) 특수학급

1993년 4월 현재 전국의 특수학급 설치 수와 학생수를 학급별로 보면, 2,662개 국민학교 특수학급에 23,126명의 학생이, 중·고등학교에 659개의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5,084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고등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수는 약시학급 3개로 대부분 국민학교, 중학교에 설치되어 있다.

한편, 운영유형별로 보면 총 3,321학급 중 31.2%(1,036개 학급)가 전일제이며, 67.6%(2,246개 학급)가 시간제 특수학급이다. 장애영역별로 보면 99%(3,300개 학급)가 정신지체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이며, 약시는 초·중·고 합쳐 8학급, 난청은 초등부 2학급, 지체부자유는 재택방문제 특수학급으로서 11개 학급이다.

연도 취학 현황은 <표 8>과 같다.

<표 8> 연도별 취학형황

연도	1971	1974	1976	1978	1980	1981	1982	1983	1984
학급수	1	210	350	351	355	414	521	721	946 (13)
학생수	30	4,418	6,931	6,442	6,045	6,547	7,665	10,976	14,027
연도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학급수	1,601 (172)	2,361 (432)	2,578 (535)	2,810 (610)	3,206 (657)	3,181 (668)	3,248 (666)	3,280 (668)	3,321 (659)
학생수	22,534	30,876	34,268	33,660	32,262	29,989	28,795	28,231	28,210

*()안은 중등학교 병설학급수임

(4) 특수교육과정

1979년에 개정된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전면 보완되어 1982년 12월에 개정 공포되었다. 거기에는 지체부자유아의 교육과정까지 포함하게 되었다.⁸⁵⁾

2) 特殊教育敎員養成 및 資格制度

1971년부터 단국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내에 특수교육과가 신설되었고, 1980년도에는 강남사회복지학교(현, 강남대학교)에, 1981년도에는 전주우석대학(현, 전주우석대학교)에 특수교직과정이 설치되었으며, 1983년에는 국립인 공주사범대학에 특수교육과가 설치되어 특수교육 교사를 양성하게 되었다.

1960년대부터 한국 4년제 대학에 정규 특수교육 교사 양성과정이 개설

85)1983년의 교육과정은 문교부령이 아니고 문교부의 고시 형식으로 바뀌었다. (문교부고시, 제83-103호)

되어 양성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대학이 특수교육 교사 공급원으로서 양성 기능을 가지게 된 것은 1970년대 후반이라고 할 수 있다.

1978년 1월 27일 공포된 교원자격검정시행규칙에 의하여 초등 특수교사 자격증이 장애영역별로 표기가 명기되지 않다가 1982년 6월 23일 개정된 동 세칙에서 초등 특수교원의 자격증이 다시 장애영역별로 환원되었다.

1993년 현재 4년제 대학에 특수교육 교사 양성과정이 설치된 대학은 모두 6개 대학으로 4개 대학은 사범대학이고, 나머지는 교직과정으로 인정받은 대학이다. 이들 중 초등교사만을 양성하는 대학이 1개교, 중등교사만을 양성하는 대학이 1개교, 초·중등 교사를 동시에 양성하는 대학이 4개교인데, 대학마다 교육방침, 현실적 여건 등에 따라 교육과정이나 장애영역별 전공과목 등이 모두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⁸⁶⁾

한편, 1992년 12월 「교육법」 중 개정법률에서 특수학교 교사 자격기준이 초·중등학교 교사와 같이 다시 1급 정교사 및 준교사로 환원되고 양성기관도 다양화되었다. 또한 특수교원의 위상이 강화되어 통합교육, 순회교육시 교육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위의 대학들에서는 맹·농·정신박약·지체부자유에 걸쳐 초·중등교사를 양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물리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등을 담당할 요육교사도 별도의 전공과정을 통해 양성하고 있는 대학도 있다.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는 특수교원의 자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특수교육개론, 언어교정, 행동교정, 물리치료, 작업치료, 감각훈련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86)교육부, 『특수교육백서』, pp.401-546.

② 대학의 물리요법과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특수교육개론, 언어교정, 행동교정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자

③ 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의 고등학교과정 이상의 졸업자로서 교육부령아로 정하는 특수교육요원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등이다.⁸⁷⁾

특수교원 이외에 요육을 보조하는 특수교육요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1977년에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의 제13조 와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 17조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특수교육진흥법」 제13조에는 특수교육기관에는 특수교원 이외에 요육을 보조하는 특수교육요원을 두되, 그 자격과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신박약아, 지체부자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학교에는 6개 학급까지 1명을 배치하여야 하고 6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2개학급까지 증가할 때마다 1명을 더하도록 되어 있다.

②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언어장애자, 정서장애자 및 기타의 심신장애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학교는 12학급까지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12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2학급 증가할 때마다 1명을 더 추가하도록 되어 있다.⁸⁸⁾

현직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연수에 대한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모든 특수교원들에게 년 1회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도록 문교부나 지방자치단체, 즉 시·도교육위원회가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이후 특수교육 담당교원에 대한 연수가 제도화되었다.

3) 特殊教育 行政과 財政

87)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7조.

88) 「특수교육진흥법」 제13조.

(1) 特殊教育 行政組織

1979년 3월 19일 대통령령 제90380호에 의하여 보통교육국의 사무분장이 조정됨에 따라 특수교육 업무는 의무교육과로 이관⁸⁹⁾되었으며, 업무내용은 초등학교 의무교육 연장계획, 특수교육진흥계획, 유치원·국민학교·중학교·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립폐지와 법인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초·중등학교 교원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그후부터 현재까지 특수교육은 계속 보통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1993년 4월 현재 한국의 특수교육기관은 106개의 특수학교와 3,321개의 특수학급으로 증가하여 특수교육 행정수요가 대폭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특수교육과 또는 특수교육계의 부활없이 타과의 하위 단위업무로 축소된 체, 중앙부서 및 각 시·도교육청에 전담기구 없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것은 특수교육을 진흥하여 복지사회를 건설하려는 정책의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2) 特殊教育財政

① 特殊教育 投資의 規模

국가적 차원에서 책정되는 특수교육비는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시행되기 이전까지는 별도로 책정되지 않고 일반 초·중등학교와 같이 의무교육을 위한 재원과 중등교육을 위한 재원에서 적의 특수교육에 배정되었다. 그러나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법률 제3053호)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특수교육비는 동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하여 별도 항

89) 「대통령령」, 제90380호

목으로서 특수교육진흥비로 책정되기에 이르렀다.

특수교육진흥비는 1979년에 책정된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문교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교육비의 0.4% 미만이고, 의무교육비의 0.6% 미만에 불과하여 특수교육재정의 열악성을 들어내고 있다.

한편, 특수교육진흥비의 지원기준은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요육실 및 직업보도실 운영, 특수교재·교구 구입, 특수학급 운영, 연구실험학교 운영 경비 등이며, 사립학교는 중·고교원 인건비, 요육실 및 직업보도실 운영비, 특수교재·교구 구입비 등이다.

사립 특수학교의 재정을 구성하는 주요 재원은 사용료 및 수수료, 원조보조금, 그리고 학교법인으로 부터의 전입금 및 재산조성비 등이다. 물론 재산조성비는 사립 특수학교 교육예산에 계상되지 않지만, 법인재산조성비의 90% 이상이 학교시설로 투자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 교육비로 간주될 수 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국고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원조·보조금이다.⁹⁰⁾

현재 사립 특수학교가 지원받고 있는 국고보조금은 사립 특수학교 재원의 95.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사립 특수학교의 유치부·고등부 과정을 제외하고는 의무교육이므로 교원인건비와 학교운영비의 대부분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고지원은 국가적차원에서 재정의 일부를 지칭하도록 하는 근거법으로 「특수교육진흥법」이 1977년에 제정되고, 이 법에 기초하여 1979년도부터 시행되었다. 사립 특수학교에 대한 국고지원은 인건비의 경우 공립 특수학교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고, 운영비는 학급 및 학급당 경비 이외에 요육실 운영비, 직업보도실 운영비, 점자도서실운영비, 교과서대금, 특수교재·교구

90)정봉도, 『특수교육의 적정단위 교육비 추정연구』, 대구대 박사학위 청구논문, 1986.pp.30-54.

비 등이 지원되고 있다.

②特殊教育財政의 配分

특수학교의 현행 교육경비 배정상황을 보면 특수학교(급)의 예산책정의 기본 근거는 「특수교육진흥법」에 두고 초등부 과정의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진흥법」 재원에서, 공립 중·고등과정의 특수학교는 의무교육비 중 중등비 재원으로, 그리고 사립 중·고등학교 과정은 사립학교 재정결합 보조 재원으로 지원되고 있다.

1992년도에 특수학교(급)에 배분된 교육경비의 년액 기준을 보면, 학교 운영비로 교당경비를 6학급까지 300만원, 7~12학급까지 340만원, 13학급 이상은 370만원으로 하고, 각 과정(유·초·중·고)중설시는 1과정마다 100만원씩 추가하고 있으며, 또 기관운영 판공비로 12학급까지는 60만원(월 5만원), 13학급 이상은 84만원(월 7만원)으로 배정하고 있다.

또 급당경비는 50만원씩 공히 배정하고 있으며, 그외 기능별 경비는 요육기구 구입비로 교당 500만원, 교재·교구 구입비로 200만원을 배정하고 있다. 교과서 구입(제작)비는 중등과정의 농, 정신박약, 지체부자유영역에 한해서만 학생 1인당 1만원씩과 지침서를 보급하고 기타 영역에는 교과서와 지침서를 보급하고 있다. 또, 직업보도실 운영비를 중·고등과정에 한해서만 기계·기구 구입비로 교당 300만원씩, 재료비로 급당 30만원씩을, 그리고 점자도서실 운영비를 중·고등과정 병설 맹학교에 교당 200만원씩을 배정하고 있다.

그리고 인건비는 교직원 개인호봉에 따른 급여액과 교장정보비, 급식비,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수학교 교원특별수당으로서 교장 월 4만원, 교감·교사 월 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공립 특수학급의 급당경비는 초등과정에 있어서는 신설학교 80만원, 기존학급 50만원씩을, 그리고 중등과정의 경우는 신설 180만원, 기존

50만원씩을 배정하고 있다.⁹¹⁾

4) 特殊教育政策

(1) 第4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 特殊教育部門 計劃(1977~1981)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 동안에 추진할 교육부문 계획 가운데 특수교육 부문으로는 특수아교육 강화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그 내용은 ①도시규모와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특수학교 미설치 시·도에 특수학교 및 학급을 신설한다. ②특수학교 중등과정 국·공립 특수학교에 한하여 무상교육으로 실시하며, 그 법적 근거 즉, 무상교육을 위한 교육관계법 개정 및 「특수교육진흥법」을 제정한다. ③사립특수학교에 대하여는 운영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고보조를 점차 확대한다. ④특수학교의 특성에 따른 교육과정을 제정한다 등이었다.⁹²⁾

2) 第5次 經濟開發 5個年 計劃 特殊教育部門 修正計劃(1982~1986)

동 기간 동안에 추진할 교육부문 수정계획을 보면 심신장애자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①특수교학교와 특수학급을 대폭 증설하여 1986년까지 주도장애아의 60% 수준을 수용하도록 하며, 사립 특수학교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의 보조 등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②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45개 중등과정 설치교에 직업보도실과 98개 초등과정 설치교에 요육실을 확보하고 직업보도용 기재 및 치료교육용 기재 등

91)교육부,『특수교육백서』1993.pp.401-546.

92)교육부,『교육백서』,1993.pp.248-254.

특수학교 시설·설비를 확충한다는 것이었다.

<표9> 특수교육 확대 계획

연도 구분		82	83	수 정 계 획			
				84	85	86	계
특수학교 증설	계	5	6	8	9	9	26개교
	공립	2	2	6	6	6	18
	사립	3	4	2	3	3	8
특수학급 증설 (초·중)		100	200	300	655	760	1,1715학급
교원증원		195	389	609	1,051	1,219	2,879명

3) 第6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 特殊教育部門 修正計劃(1987~1991)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추진할 특수교육 발전 계획을 보면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박약, 지체부자유 등 심신에 장애를 지닌 학생들에게 장애로 인한 결손을 보상하고 잔존능력을 개발시켜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재활능력을 신장시켜 주기 위하여 국·공립 특수학교(급)를 신·증설하며, 이들의 취학기회를 확대하고 교육내용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여 명실상부한 장애자 복지사회를 구현시킨다는 것이었다.⁹³⁾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아 취학 기회 확대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심신장애아의 건전하고도 원만한 사회 적응을 위하여 특수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수교육은 교과지도, 직업보도, 요육 등 3요소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중도 장애자는 특수학교에서, 경도 장애자는 특수학급(일반 국민학교 및 중등학교 병설)에서 교육받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6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국·공립 특수학교 16개교와 1,055개의 특수학급을 신·증설하여 중도 장애자는 가급

93) 교육부, 『교육백서』, 1993, pp.248-254.

적 특수학교에 진학시키고,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정도 장애자는 특수학급에 수용·통합 교육할 계획이다.

②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특수교육의 질적 개선을 통해 직업적응 능력 제고와 개별 학습지도를 강화하고, 특수교재·교구의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중학부 이상의 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을 직업교육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교육과정 개정시 직업교육 내용을 강화한다.

③ 우수 특수교사 확보

우수 특수교사 확보를 위하여 교원들의 처후를 개선하는 한편 특수교사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양성기관에서의 신입생 선발시 인성, 적성 등을 감안하여 선발토록 하며 양성 교육과정도 표준화한다.

④ 국립 특수교육원 설립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등 장애영역별 교수-학습방법 및 자료 등을 연구·개발하고 특수학교 교원 및 특수학급 담당교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기관으로서 특수교육원을 설치한다.

4) 第7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 特殊教育部門 計劃(1992~1996)

이 시기는 모든 개인의 질 높은 삶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심신에 장애가 있는 특수 아동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확대·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계발하여 생산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특수 재능이나 자질을 가진 영재 아동이 각자의 잠재능력과 적성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질 높고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잠재력 극대화를 위한 특수·영재교육”의 진흥계획을 제시하고 있다.⁹⁴⁾ 이 가운데 특수교육

진흥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특수교육 기회 확대

a. 특수학교 및 학급증설

· 특수아동에 비해 특수학교가 부족하므로 지역적인 안배와 장애영역을 고려하여 '96년까지 19개의 특수학교를 증설한다.

· 경도장애 아동을 일반학교에 수용하기 위하여 1996년까지 1,800개의 특수학급을 증설한다.

· 중도장애 아동들도 일반학교 내에 있는 특수학급에 다닐 수 있도록 시설·설비를 보완하며, 중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증설한다.

· 학교에 통학할 수 없는 중도장애 아동에게도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청이나 특수학교 단위에 순회 교사제를 확대하고, 현재 전국에 12명밖에 없는 순회교사를 1996년까지 290명이 되도록 확보하여 시·군·구 교육청 단위에 최소한 1명의 순회교사를 배치한다.

b. 장애유아 조기교육 기회 확대

· 장애유아의 조기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특수학교에 유치부(학급)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1996 학년까지 120개를 증설한다.

·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아 조기교육 센터'를 장애유아 전용 유치원 등으로 전환하고, 이러한 센터의 설치를 인가제로 한다.

· 사립 유치원에 장애유아를 위한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인건비는 정부에서 보조하도록 하여 계획기간 동안 총 500개 학급까지 확대한다.

② 특수교육 프로그램 확충

a. 특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적용

·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장애특성에 알맞는 교

94)교육부,『교육백서』,1993,pp.248-254.

육용 도서를 보급하기 위하여 1996년까지 교과서 208권과 지도서 146권 총 354권의 교과용 도서를 개발·보급한다.

- 각 지역 특성, 장애영역, 연령에 알맞은 다양한 교수·학습자료를 1996년까지 총 250종 개발·보급한다.

- 특수학교의 교수·학습방법 연구·개발 및 보급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시·도교육청별로 매년 10개씩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 특수학교 사범학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장애 등 장애영역별로 지정·운영한다.

b. 특수아동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 고등부를 마친 학생들이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별로 국립 특수학교 내에 전공과(1~2년제)를 설치·운영한다.

- 국립 특수교육원이 주축이 되어 특수 장애영역별로 적합 가능한 직종을 연구·개발하고, 각 직종에 필요한 직업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자료를 개발·제공한다.

- 국립 특수교육원에서는 현장 실습훈련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중심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③ 특수교육 지원체제 확립

a. 특수교육 행정 및 연구 지원체제의 확충

- 교육부의 보통교육국에 '특수교육담당관'을 두며, 각 시·도교육청에 특수교육 담당계를 설치하여 특수교육의 전문인력을 배치한다.

- 1992년에 특수교육연구소를 설치하여 특수교육 연구, 교수·학습자료 및 교원양성·연수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b. 담당교원 양성 및 재교육 강화

-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석사학위 소지자에게 특수교육 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도록 한다.

· 특수교육과 출신자에게는 특수교육 교사자격증을 장애영역의 구분없이 특수교육 2급 정교사 자격을 발급하도록 하고, 1급 정교사 과정부터 장애영역 구분을 통한 전문교사를 양성한다.

· 특수교육 담당교사의 질 향상을 위해 공통과정과 장애별 전공과정에 대하여 국가적 수준의 표준을 설정하도록 한다.

5) 特殊教育 發展計劃

교육부는 1992년에 1993년부터 2000년까지 장애아동의 교육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이들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를 목적으로 특수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⁹⁵⁾ 그 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아동의 취학기회 확대

a. 특수학교 신설 : 33교

* 통·폐합 시설활용 신설 : 9교

* 도심지 잉여시설 활용 특수학교 병설 : 10교

* 순수신설 : 14개교

b. 분교장 설치확대(7개소 - 113개소) : 장애인 복지관 수용시설의 공간활용

c. 특수학급 증설 및 내실화

* 학급증설 : 3,350학급

* 유자격자 배치

② 특수교육 연한 연장

고등부 연장교육으로 직업교육 심화과정(전공부) 설치(1 - 2년)

95)교육부,『교육백서』,1993,pp.248-254.

- ③ 조기 치료(교육)기관의 양성화
 장애유아 미등록 강습소(전국 84개소) :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교습소 등록 또는 유치원 인가
- ④ 특수학교 교원자격 및 양성제도 개선
 a 특수교사 자격구분 세분화 : 정교사 - 정교사(1,2급), 준교사
 b 특수교사 자격취득 방법 다양화 : 2종류 - 5종류
 c 특수교사 양성대학 교육과정의 표준모형 제시
 d 특수교장(감) 자격기준의 불균형 시정
- ⑤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호봉격차(1호봉) 해소
 (특수학교 근무시 10호봉, 특수학급 근무시 9호봉)
- ⑥ 특수학교 교장 자격추천검정 기준 강화 : 감경기준 삭제
- ⑦ 일반교원 양성대학의 특수교육 교과목 설치 권장
 특수교육학 또는 특수아지도론
- ⑧ 특수교육담당 조직 강화
 교육부 : 정원 증원 또는 과단위 전담부서 설치
 시도교육청 : 특수교육담당 장학관 배치
- ⑨ 특수학교 특수시설, 설비 확충 : 93 - 96
 요육실, 직보실, 기숙사, 통학버스 부족교 지원
- ⑩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여건변화 대응 및 특수교육 발전방향 정립

3. 結論 및 提言

第 1 節 結論

한국특수교육행정사의 제1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는 1945년부터 1969년까지의 기간으로 가장 주목되는 특징은 「교육법」을 통해 특수교육제도가 규정됨으로써 특수교육행정의 초석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교육법」을 통해 특수학급 설치 및 특수학교 설립 의무화를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을 제도적으로 정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 특수교육행정의 발전은 1970년대 이후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증대되고 공적 책임이 확대되면서 비로소 시작되었는데 1970년부터 1976년까지의 기간을 한국특수교육행정사의 제2기라고 할 수 있다. 교육발전과 국민의 재정능력 증대를 기반으로 특수교육이 확대되었고 특히 1969-70년에 작성된 「장기종합교육계획」은 70년대 이후의 특수교육에 대한 공적 관심과 책임의 증대를 지향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한국특수교육행정사의 제3기는 시기적으로 1977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으로 1977년에 특수교육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공포되었고 1984년에는 특수교육진흥 7개년 계획이 수립됨으로써 특수교육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시기적 특징이 있다. 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정부는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고 그것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확대를 통해서 종래에는 기회를 얻지 못했던 특수아동들에게 새로운 교육기회를 주었다.

한국특수교육행정사의 시기적 특징을 토대로 한국특수교육의 문제 및

개선방안을 검토해보면 크게 특수교육기회의 확대, 특수교육의 질적 제고, 교사양성과 재교육, 지원체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주목된다. 즉 한국특수교육은 특수교육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양적으로는 교육기회가 균등해져야 하며 질적으로는 교육결과가 균등해져야 한다. 또한 특수교육의 질적 제고라는 차원에서는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의 수월성이 보장되고 특수교육의 전달체제에 대해 전문적 수준의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교사양성과 재교육 차원에서는 특수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직전교육과 현직교육의 강화되어야 한다. 끝으로 지원체제 차원에서는 장애아동을 위한 법적 대책은 물론이며 행·재정적 지원체제 강화가 되어야 한다.

第 2 節 提 言

1. 特殊教育의 機會擴大

특수아동의 교육기회 확대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양적, 질적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양적 확대란 교육기회균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각급 학교 취학율을 제고시키는 것이며, 질적 문제는 교육결과의 균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불균등한 투입을 필요로 한다. 특수아동의 교육적 조치의 최근의 경향은 최소로 제한된 환경의 제공, 적절한 공교육의 보장, 그리고 교육기회의 균등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아동 개별로 적절한 공교육을 보장하고 교육기회를 균등화하려면, 우선 특수아동을 위한 교육기관 내지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전문화해야 하며, 이러한 터전에서 아동 및 환경적 제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⁹⁶⁾ 따라서

특수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개선·조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적절한 공교육을 보장해야 한다. 공교육이란 국가의 책임 아래 모든 장애아동에게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에 의하면 한국 특수교육은 무상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무상교육이란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고 있는 장애아동에 대해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미취학 특수아동에 대한 취학의무 등은 실질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일반아동과 같이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한 장애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은 물론 모든 장애아동이 의무적으로 학교에 취학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기관, 그리고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부모들에게까지 의무를 과하여 취학조치에서부터 완전한 의무교육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학년기 장애아동 중 20% 정도가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이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둘째, 교육기관의 확충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 특수교육 대상자 중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수용되어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아동은 20%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나머지 방치되어 있는 특수아동에 대해서도 특수교육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부모들의 계몽과 국가적 시책강구 등으로 방치된 특수교육 대상아동들에게까지 특수교육의 기회가 확대될 때 이들의 수용에 필요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신증설은 불가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96) 한국특수교육학회 제14회 특수교육심포지움 보고서, 『특수교육제도의 개선방향』, 1988. 참조.

먼저 특수학교의 경우를 보면, 1993년 현재 한국 특수학교의 수는 106개교로서, 이 중 사립 특수학교가 70%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그동안 국가가 특수교육기관 설립에 그만큼 인색해 왔음을 말해주고 있다. 앞으로 교육기회 확대와 더불어 필요한 특수교육기관을 신설할 때에는 국·공립 특수학교를 보다 많이 신설해 나가야 할 것이며, 장애별, 지역별, 형평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은 국민학교에 2,662학급, 중·고등학교 659학급, 총 3,321학급이 설치되어 있으나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특수학급은 그 대부분이 초등과정과 정인지체학급으로 편중되어 있다. 장애아동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고등학교 과정과 시각장애아동, 청각장애아동 및 학습장애아동 등을 위한 특수학급도 필요에 따라 함께 확충해 나가야 한다.

셋째, 특수아동의 판별과 교육조치의 적절화이다. 장애아 판별과 진단의 필요성은 장애조건의 예후나 특성에 따라 적절한 교육조치를 배려하는데 있다. 따라서 판별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특수아동의 교육을 보호하고 행정적인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구상되어야 한다. 잘못된 분류나 진단은 자아성취 예언에서 낮은 자아기대를 갖게 하는 등 아동에게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부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타당한 검사과정과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관련인사들의 독단적이고 부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예방하여야 한다. 이것을 예방하고 부모와 학생의 교육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평가와 조치에 대해 부모가 이해할 수 있고 수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판별제도의 운영 면에서 제도 자체는 모든 특수아동이 확인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보육적 조치의 적절성은 판별절차나

실제적인 기술의 적절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검사도구와 평가방법, 관련인사의 전문지식 등을 고려한 전문성과 다학문적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판별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취학시기에 그 대다수가 이루어지게 됨을 고려할 때 중학교 이하 교육기관의 취학업무를 관장하는 시·군·구 교육청이 판별제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문가의 확보가 어려운 취학지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역간의 교류나 제도의 융통성이 있는 운영이 요구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시·도 단위의 판별위원회 제도는 담당위원의 전문성과 광범위한 대상지역 때문에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판별제도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현행 시·도 판별위원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급관청인 시·군·구 교육청 판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행 제도를 보강함이 좋다. 그러나 하급교육청 단위의 판별위원회는 위원의 자질과 전문성 확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시·군·구 교육청간의 협조나 시·도 판별위원회의 협력으로 보충시킬 수 있는 것이다.

판별제도의 구성은 중심기관인 시·군·구 교육청 판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상부관청으로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 차원에 각각 판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하급기관으로 학교단위에는 선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판별업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판별제도 구성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판별된 장애아동은 장애종별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적절한 교육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수아동의 교육적 조치는 가능한 한 정상아동과의 상호작용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고, 정상아동의 교육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특수아동의 능력과 교육적 요구가 변화하면 환경제한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교육의 장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장애영역별로 교육프로그램을 세분화하고 전문화하는 것

이다. 관련된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을 때 개별교육에 의한 교육적 요구의 충족이 그만큼 더 가능해질 수 있으며, 최적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특수아동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은 정상아 교육에서 이탈되는 정도에 따라서 일반학교 내의 일반학급, 일반학교 내의 특수학급, 특수아동을 위한 특수학급, 기타 관련된 훈련 및 수용기관 등으로 구분된다.

넷째, 특수아동의 조기교육 강화를 들 수 있다. 인간의 능력은 발달의 적기가 있는데 그 적기를 놓치면 학습의 효과는 보장되지 못한다. 대체로 지능과 언어훈련, 그리고 감각훈련은 어릴수록 그 효과가 크다. 특수아동은 그가 갖는 장애로 인해 충분한 경험을 갖지 못하게 되므로 정상아동보다 더욱 조기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청각장애아동의 언어훈련은 조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특수교육은 3세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최근에 와서는 출생과 동시에 시작하든지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시작하고 있는 경향인데, 조기교육을 통해서 교육적 효과는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현재 한국 대부분의 특수학교에 유치부가 설치되어 있고, 또 사설 조기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조기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아동이 아직 많이 있다. 특히 조기교육센터는 정부의 감독이나 지원이 전혀없는 상태여서 경영상 어려움이 많다. 앞으로 이러한 조기교육센터를 양성화하고, 법적·재정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기교육의 기회확대를 위해 농촌지역 국민학교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공립의 특수유치원 내지는 특수학급 유치부를 많이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설치시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적 조치도 아울러 필요하다.

2. 特殊教育의 質的 提高

장애아동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양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일은 한국과 같이 비교적 특수교육의 역사가 짧은 국가에 있어서는 더욱 절실한 과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에 수반하여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의 수월성 보장을 위한 질적 개선에도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공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특수교육에 있어서도 재정투입에 대한 산출의 공적인 보증을 강조하는 책무성의 개념이 엄격히 적용될 필요가 있다. 특수교육은 시혜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여 우선 장애아동에게 교육기회를 확대 제공해 주는 그 자체만 행·재정적인 지원을 생각하다 보면 자칫 교육의 수월성 보장을 위한 책무성이 소홀히 다루어지기가 쉽다. 오늘날의 특수교육은 분명히 공적인 활동이며 그 행위의 대상이 심신에 장애를 지닌 아동이기 때문에 더욱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따라서 그 교육의 질적 관리를 위해 보다 엄격한 책무성이 요구되고 있다.

오늘날 특수교육에 있어 교육의 경영도구로서 개별화된 교수프로그램(IEP)의 개발을 의무화하고 있다든지, 수행능력(competencies)에 기초한 교육의 성취를 강조한다든지, 교육의 결과를 국가적 수준에서 혹은 특정 프로그램 단위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려는 종합평가제를 적용하는 것 등은 모두 교육에 있어 이 책무성의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한국 특수교육이 질적인 수월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히 특수교육의 전달체제를 전문적 수준에서 잘 관리하고 확립할 필요가 있다.⁹⁷⁾

97) 김영환, "한국특수교육의 현재적 위상", 『특수교육학회지』, 제15집, 제1호, 1994, PP.191-209.

특수교육에 있어서 전달체제를 확립하는 것은, ① 대상아동의 발견 ② 진단과 판별 ③ 교육적 배치의 결정 ④ 교수학습의 전략 및 그 적용 ⑤ 결과의 평가 등 일련의 과정이 체제접근 이론에 입각하여, 그 전문성이 일관성 있게 잘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⁹⁸⁾

첫째, 대상아동의 발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발견을 위해서 임신부와 유유아(乳幼兒)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상담지도 등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장애가 발견되는 즉시 신고 및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특수교육 대상아동의 발견을 위한 국가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하는 일이다.

둘째, 특수교육 대상아동의 진단과 판별은 개개 장애아동의 삶의 방향을 규정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진단과 판별절차에 있어 과학적 정밀성과 더불어 그 과정의 합리성이 항상 존중되도록 해야 한다. 즉, 잘 정선된 타당한 검사도구의 적용, 판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전문영역간의 팀접근의 비밀을 활성화하는 것, 판별과정에 아동과 부모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배려하는 것 등 일련의 조치가 제도적으로 잘 실천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장애아의 교육적 조치는 개개 아동의 장애특성에 최적한 교육의 장을 다양하게 마련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한국에서는 장애아동들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적 배치의 선택기회가 기숙제 혹은 통학제의 특수학교와 일반 초·중등학교내의 전일제 특수학급에 한정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교육배치의 기회가 다원화될 수 있도록 특수교육제도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장애아동을 위한 교수 학습전략의 개발과 적용은 철저히 개별화의 원리에 입각하여 개개 아동의 독특하고도 특이한 교육적 요구를 가장

98) 김병하, "한국의 장애인 인력개발 정책고", 『이태영박사 화갑기념논총』, pp.65-85.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사이다. 개별화의 성공은 교사의 의지와 교육기술에 의하기 때문에 개별화를 위한 훈련된 교사가 특수교육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자료가 개별화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특수교육의 자료개발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특수교육을 발전시키는 활력소가 될 것이다.

다섯째, 교육행위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교육에 있어서 공적 책무성을 따질 수 있는 준거를 마련해 주는 마지막 단계이다. 이 때 평가는 개별 아동에 대한 준거 지향적 평가와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동시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특수교육에 있어서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수아동들을 위한 교육전달체제를 전문적 수준에서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3. 教師養成과 再教育



한국 특수교육의 발전과제의 하나는 훌륭한 특수교사를 양성·확보하고, 이들 교원의 자질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현직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일이다. 그것은 교원의 모든 교육활동의 주체로서 직접적으로는 교육의 질과 성패를 결정하고, 간접적으로는 전체 국가사회발전의 수준과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한국 특수교사 양성제도와 재교육에 대한 발전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1) 教師養成制度

발전적 교사양성제도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① 특수교육에 필요한 전문교원을 어떤 수준의 교육기관에서 양성할 것이며, ② 어떤 내용의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③ 어떤 전문교원을 양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사를 어떤 수준의 교육기관에서 양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한 세계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특수교사는 4년제 대학 혹은 대학원 수준에서 양성되거나, 일반 초·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1~2년제의 특수교육 전공과정을 통해 양성되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 행정가들은 석사과정 이상의 수준에서 양성하며, 보조요원들은 2년제 대학의 관련 학과에서 양성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4년제 대학의 특수교육과에서 특수교사를 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다음 두 측면에서 그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그 하나는 4년제 대학과정에서 대학과정의 일환으로 교사를 양성하는 개방양성 체제와 교사가 되고자 하는 후보자들을 교사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과정에 별도로 선발하여 교육하는 목적양성 체제가 혼성되어 있는데, 현행 양성체제의 실정으로는 특수교사의 전문성을 적절히 보충해 줄 수 있는 심화된 교직·전공과정을 제공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 양성제도 유형에 있어 현행의 4년제 대학과정에 의한 기초형을 위주로 하면서 교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양성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다든가, 이수학점 기준을 현재보다 강화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 교육대학원의 특수교육 전공과정을 통해 현직형 양성체제를 보완·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 교육대학원에서 현직형 양성체제를 활용하는 방안은 1992년 11월 교육법 개정에 따라 현행 특수학교 교장, 교감, 교사의 자격기준이 보완·개정됨으로써 다행히 그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다른 하나는 대학의 “특수교육과”라는 단위학과에서 초·중등별, 장애 영역별, 교과별 모두에 걸친 특수교사를 한꺼번에 양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대학마다 자체의 양성 능력에 따라 특수교사 양성을 재조정하여 양성대학의 현실적 여건과 특수교사의 국가적 수급전망 등에 비추어 양성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문교원을 양성하는 양성과정의 구성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교사양성과정은 길러 내고자 하는 교사의 수행능력에서 아동의 이해 측면인 교직과정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내용 구성의 방향에 상당한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일반적으로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그 교육대상이 갖는 특수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직과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아동을 위한 교사양성 과정에 비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처럼 교직과정과 교직과정간의 비중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두 과정간에 내적인 연계성을 어떻게 확립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때문에 대학의 특수교사 양성 과정은 현장에서 교사가 하는 직능수행에 직결되는 능력들에 기초한 것으로 구성·운영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특수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사양성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은 우선 특수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적 수행능력을 기르는 내용이다. 특수교사에게 요구되는 수행능력은 ① 모든 교사에게 공통으로 요구되는 일반교직 수행상의 전문능력 ② 장애영역에 관계없이 모든 특수교육 대상아동의 이해와 지도를 위해 공통으로 요구되는 전문능력 ③ 장애별 특성에 따라 집중적으로 심화되는 전문능력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 과정은 내적으로 잘 연관, 융합되어 있어야 한다. 특수교육 공통과정은 최저 12학점 이상으로 하여 반드시 특수교육개론, 특수아동 심리 및 측정을 포함하도록 하고, 장애별 전공은 최저

18학점 이상으로 하여 장애별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토록 한다.⁹⁹⁾

결국 특수교육 교사양성과정은 교사의 수행능력에 기초한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장점을 살려·개발 운영토록 하고, 양성과정 구성에 있어 특수교육공통과 장애별 전공에 대한 국가적 표준을 설정하여 모든 양성기관에서 이 기준을 반드시 준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어떤 전문교원을 양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는 어떤 자격증을 주어야 할 것인가라는 말로도 해석된다. 오늘날 전문직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전문적 수행에 필요한 일련의 교육을 받아야 할뿐만 아니라, 소정의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전문직으로서 교직도 자격증이 없이는 누구도 교사가 될 수 없다는 유자격제도를 법으로 명백히 하고 있다.

장애아동의 교육과 재활에 필요한 전문교원은 학급담당교사, 교과담당교사, 요육교사, 직업보도사, 각종 요육사, 보조요원 등으로 구별되는데, 이들 교원은 그들이 수행하는 전문적 직능수행의 특성에 따라 자격증이 주어진다.

현재 한국에서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맹·농·정신지체·지체부자유 등의 4개 영역으로 분화되고 있는데, 장애영역에 따른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은 기존의 맹·농·정신지체·지체부자유 외에 앞으로 최소한 정서장애와 언어장애 영역이 새로 추가되어야 한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존의 4개 장애영역 외에 정서장애와 언어장애치료사 양성과정을 새로이 추가하여 실시해 오고 있으며, 미국은 전체 특수교원양성 프로그램 가운데 언어장애치료사 양성과정을 많이 개설하고 있다.

또한 정신지체 특수교사의 경우 자격증에 초·중등을 구분하지 말고, 표시과목도 정신지체 특수학교 교육과정 특성에 비취 통합교과로 재조정되

99)김병학,『교사교육과 특수교육』,대구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1985.p.12.

어야 할 것이다.

2) 教師 再教育

교직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은 비단 직전교육 단계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임용 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은 주로 고도의 지식과 기술적인 봉사를 하는데 그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직자가 항상 올바른 교육이론과 새로운 교육기술을 익혀 교육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재교육 체제와 그 프로그램이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교사교육에 투자하는 경비 가운데 직전교육에 못지 않게 현직교육 프로그램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경향이다.

교직은 평생을 바쳐 일해야 할 전문직이므로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계속 교육으로서의 현직 재교육이 제도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현행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원과 특수교육요원에게 그들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교육기관에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연수교육의 과정과 그 내용 등은 연수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특수교사에 대한 일반연수는 연 1회에 한하여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대구대학교 부설 특수교원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수강 인원등의 한정으로 교육 희망자 전원을 연수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직교육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로 하여금 교직에 대한 각성적 태도와 더불어 전문성을 신장시키게 하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게 해야 하므로 앞으로 더 많은 특수교사들에게 연수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연

수기관, 연수 횟수 등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시·도교육청과 특수교육과를 설치한 대학에서 일반 및 장애별 연수를 보다 확대해 나가도록 권장해야 할 것이다. 100)

또한 교사를 위한 현직교육이 교직의 전문성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연수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교사들의 직능수행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발·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재교육 과정은 단지 직전교육의 내용을 되풀이하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특수교육의 새로운 변화 동향에 따라 현장교육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4. 支援體制

특수교육은 인간에 대한 깊은 존엄성에 입각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므로써 그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즉, 한국 특수교육의 양적 보급과 확대는 우선 정부차원의 행정적 지도력과 재정적인 지원이 어느 정도 강화·유지되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공교육의 일환으로 특수교육을 촉진함에 있어서 정부는 특수교육에 대한 공적 책무성의 범위를 더욱 확대해 가야 할 윤리적인 책무가 있는 것이다. 최근에 선진한 여러 나라들이 장애아동의 교육과 재활을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체제를 국가적 수준에서 더욱·확충해 가는 것은 단순한 공리적인 주장에서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아동의 특수교육을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지원체제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는 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적절한

100) 김병학, 상계서, p.19.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일이다. 여기서 “법적조치”라 함은 국가가 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필요적절한 관계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은 물론 입법조항을 명분상으로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의 입법조항에 의해 장애아동 개개인의 독특한 교육적 요구에 따라 가장 적절한 교육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무상 의무교육의 실시와 직업교육을 통한 사회적 자활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수준에서 장애아동의 교육을 위한 입법조치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이념적인 규범으로서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해 주는 기본법(헌법, 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 등)과 이에 대한 실제적인 의미를 부여해 주는 행정적 법령, 규약, 조례 등이 주안점이 되어야 한다. 특히 특수교육의 기본법인 현행 특수교육진흥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여러 측면에서 수정 보완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입법조치에는 특히 다음의 세가지 측면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¹⁰¹⁾

첫째, 장애아동의 조기교육을 구체적으로 보장·추진하는데 필요한 법제적 대책을 강화하는 일이다. 발달심리학의 연구 성과에서 밝혀진 과업의 적기성, 경험의 누적성, 발달단계의 불가피성들은 조기교육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다. 심신에 장애를 가진 특수아동에게 발달초기에 장애조건을 제거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해 취학전 조기교육 대책을 법제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오늘날 유아교육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 미국의 헤드 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은 원래 특수교육 대상아동에 대한 교육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시도된 것이다. 미국 장애아동교육법(PL 94-142)에서도 특히 출생시부터, 또는 장애가 발견되는 즉시 교육을 시작하도록 입법조치한 것은 우

101) 김원경, “한국특수교육의 발전전망”, 『특수교육학회지』, 제15집, 제1호, 1994. PP.215-225.

리들에게 많은 시사를 주고 있다.¹⁰²⁾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가 그들의 자녀가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조기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취학연령이 되기까지 교육받을 기회를 유보한다는 것은 껍 불행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잘못된 제도의 부작용이기도 하다. 1986년부터 한국의 대부분의 특수학교에 유치부를 설치해 가고 있는 것은 껍 다행한 일이지만 관련 법적 조치가 미흡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인사 행정상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둘째, 학령기(만 6~17세까지)의 모든 장애아동들에게 적절한 공교육의 기회를 실제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 특수교육제도의 확립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한국에서 학령기 장애아동의 80% 이상이 아직도 교육기관에서 장애에 부응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프로그램의 마련도 극히 미흡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셋째, 특수교육의 행·재정적 지원체제를 강화하는 일이다. 수립된 특수교육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원체제의 조직이 있어야 하고, 그 조직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한국에는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아직 특수교육을 전담하는 행정기구가 없다.

이와 같은 실정은 곧 한국 특수교육이 현실적으로 크게 발전하지 못한 원인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의 직제령을 개정하여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특수교육과를 각각 설치하여, 이러한 조직을 통해 지원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수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특수

102)Smith,D.D., & Luckasson, R, Introductory to Special Education, Boston : Allyn & Bocon, 1992, pp.34-57.

아동 교육비는 일반아동 교육비보다 많이 소요된다. 그 이유는 장애아동은 정상아동에 비해 부가적인 서비스의 제공, 다양한 직업교육의 실시, 학급당 인원수의 소규모, 일부 장애아동에 대한 중복적인 서비스 제공, 기숙제 등에 따른 교육비가 추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족 되는 특수교육 재원을 해결하고 안정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은 아직 사립 특수학교가 68%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사립특수학교가 재정난으로 학교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사립특수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¹⁰³⁾

이상과 같이 제시된 특수교육 행정조직의 신설과 특수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의 개선은 한국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시급히 개선·조치되어야 한다.



103) 정봉도, “특수교육재정의 개선방향”, 『특수교육제도의 개선방향』, 한국특수교육학회, 1988. pp.35-54.

參考文獻

- 교육부,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자료』, 1991.1992.
- 교육부, 『특수교육백서』, 1993.
- 국립서울맹학교, 『개교 80년사』, 서울 : 서울맹학교, 1993.
- 김병하, 『특수교육의 역사적 이해』, 서울 : 형설출판사, 1985.
- 김원경, “한국 특수교육 교원 인사행정의 개선”, 『특수교육논총』, 제6집, 1989.
- 김정권, “특수교육의 발달”, 『특수교육원리』, 대구 : 한사대출판부, 1973.
- 문교부 법무관실(편), 『문교법전』, 서울 : 교학사, 1972.
- 문교부, 『특수학교 교육과정』, 1966.
- 문교부, 『특수교육 5개년계획(시안)』, 1967.
- 문교부, 『장기종합교육계획(안)』, 서울:장기종합교육계획심의회, 1970.
- 문교부, 『특수교육운영자료』, 1970.
- 문교부, 『정신박약아 교육과정』, 1973.
- 문교부, 『특수학교 경영, 장학자료 제46호, 제47호』, 1985. 1986.
- 안병준, 『한국특수교육의 발달과정에 관한 일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4.
- 이완정, 『교육법의 이론과 실상』, 서울 : 문음사, 1986.
- 정봉도, 『특수교육의 행정 및 재정』, 서울 : 특수교육, 1994.
- 최병문, 『특수교육칼럼』, 서울 : 말한다 출판사, 1979.
- 특수교육연구소, 『한국의 특수교육』, 대구:한국사회사업대학, 1976.
- 한국특수교육연구협회, 『특수교육』 제1호, 서울:공병우 한국타이프사, 1962.

- 한국특수교육연구협회, 『특수교육회보』 제1호, 서울:국제인쇄,1969.
- 한국특수교육학회, 『특수교육 제도의 개선방향』, 제4회 특수교육심포움
보고서, 1988.
- 한국특수교육협회, 『제1회 특수학급설치운영에 관한 세미나 보고서』,1973.
- 한국특수교육협회, 『전국특수교육요람』,1991.
- 한국특수교육협회, 『전국특수교육요람』,1992.
- 한국특수교육협회, 『전국특수교육요람』,1993.
- 한국특수교육협회, 『한국특수교육협회 30년사』,특수교육,1994.
- Smith,D.D., & Luckasson, R., Introductory to Special Education,
Boston : Allyn & Bacon, 1992.



<Abstract>

**The Study About The History of Speci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of Korea
Lee Sang–Jin**

*Education Administr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Jin–Geon*

The first period in the history of speci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of Korea can be said to be from 1945 to 1969, during which special education was systematically arranged by education law which required to establish special schools as well as special classes. This period has become a stepping–stone for speci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Progress has been made in speci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since 1970 when governmental interest has been increased. It is said that the second period is from 1970 to 1976. Owing to the educational and economic development during this period, special education has been expanded. Especially, the long–term general educational plan made in 1970 served as a milestone which showed the increased public interest since 1970.

The third period in the history of speci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is from 1977 to the present. The seven–year special educational development plan was made in 1984, which allowed more investment on special education than before. More special

children has been given opportunity to learn through the expansion of special schools as well as special classes as a result of this plan.

The following can be suggested in order to solve the current problems with special education in Korea. I believe that the expansion of opportunity for special education, improvement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training, and government's support for special education are absolutely necessary to improve special education in Korea.

